

제1절 특허·실용신안 심사 분야

1. 개관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총괄과 과학기술서기관 고상호

4차산업 시대 도래에 따른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디지털 전환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등 기술패권 장악을 위한 국제적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패권의 핵심 무기인 특허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허 기반 기술을 통한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화와 특허정보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며 정확한 심사서비스 제공으로 특허의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국가 핵심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심사인력을 확보하여 우선심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산업 전략에 따른 특허심사 정책 수립 등 우리기업이 강력한 특허로 무장하여 해외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22년부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분야 기술전문가를 전문 임기제 심사관으로 채용하는 것을 추진해

왔고, 그 결과 '23년 3월에는 30명을 채용하였으며 '24년 1월에는 37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23년 4월에는 주요국 최초로 반도체 전담 심사조직인 '반도체심사추진단'을 신설하여 새로 채용한 기술전문가를 즉시 심사업무에 투입함으로써 반도체 분야에 대한 신속·정확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심사관 채용은 심사역량 확보라는 점 외에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우선 일반적 공무원이 아닌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이라는 점에서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고, 현장 경험의 풍부한 퇴직기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심사 업무에 적합한 인력의 채용이며, 동시에 이들의 해외 이직을 억제하여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반도체심사추진단에서 근무하는 심사관 중에는 외국 기업으로부터의 취업 제의를 거절하고 특허청 심사관으

로 입사한 사례도 있어, 기술패권 경쟁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에 기여한 바가 크다.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인사혁신처에서 주최하는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또한, 고품질의 심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심사관 개인의 집중력을 고도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특히 오전, 오후 「집중심사시간제」를 도입하여 심사업무 외 다른 업무는 일체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사과로 걸려오는 문의전화는 전담직원이 응대하는 「대표전화 응대제」를 시행하였다. 이렇게 조직의 일하는 문화 자체를 전면 변화시킨 결과, 업무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고 이 또한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였다.

한편, 특허청은 산업계·연구기관 등 고객의 목소리와 산업별 기술 특성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일환으로 '19년부터 산업·특허 동향 조사사업을 추진해왔다. '20년 AI 시각 지능, 자율주행센서 등 16개, '21년 자율주행차, AI 딥페이크기술, 가상융합, 수소운송기술 등 15개, '22년에는 초거대 AI 모델, 차세대 전지, 포스트-양자암호 등 15개 분야에 이어 '23년에는 반도체 초미세공정 기술, 이차전지 용 음극재 등 15개 분야를 포함, 그동안 총 61개 분야에 대한 산업동향과 특허데이터를 분석하여 해당 분야 산업·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특허심사 역량을 키워왔고, 기술 특성별 특허제도 개선, 산업 관점의 특허심사

실무 개선을 위한 가이드제정을 추진해왔다.

또한, 기술의 융복합화 및 다양화에 대응하여 특허분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 산업 특성에 맞는 자체분류체계(KPC)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분류인 新특허분류체계(Z코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심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였다. 우선 무선자원 할당 분야의 KPC 코드를 국제특허분류(IPC)에 반영하여 국제표준화를 완료하였고, 반도체 회로 및 디스플레이 소자 분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한 녹색기술분류체계를 마련하여 우리나라 첨단 전략산업 및 친환경 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특허 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허청은 '48년 1호 특허를 시작으로 하여 '00년에 100만 번째 특허 등록 후 9년만인 '19년에 200만 번째 특허 등록을 달성하였는데, 이는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이다. '23년에는 24만 3천여건의 특허·실용신안이 출원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것이며, 국내 PCT 출원도 29,275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처럼 특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특허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혁신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심사처리 기간 유지와 고품질의 심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 특허·실용신안의 신속한 권리화 및 심사품질 제고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총괄과 특허제도과	시설사무관 공업사무관	서장원 강해리
---------	------------------	----------------	------------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규모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이고, GDP 대비 특허출원은 세계 1위 수준으로 특허출원의 양적 지표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또한 IP5 체제 공고화, 국가간 심사공조체제 확대 등으로 인해 국가별 심사결과의 상호 비교 및 활용의 기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 특허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특허청과의 심사협력 및 심사품질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특허·실용신안의 신속한 권리화 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서나 인정받는 고품질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국가간·기업간 특허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양상 또한 복잡해짐에 따라, 과거에는 외부로부터의 특허공세에 방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극적인 특허전략을 구사하던 기업들이 점차 특허를 이용창출의 유용한 도구로 인식하면서 시장 확보, 경쟁기업 견제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의 특허전략이 기존의 양 위주에서 질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강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허 심사처리 기간 단축에 대한 외부고객의 요구는 지속되고,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로 고품질 심사를 통한

강한 특허창출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지식재산 투자·담보·보증의 활성화로 IP 금융이 3조원대(‘22년)로 급성장하고, 지식재산권 고의침해 시 3배 배상 도입(‘19.7월 시행), 손해배상 현실화(‘20.12월 시행) 등으로 기업의 무형자산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정확한 지식재산 가치평가와 분쟁예방을 위한 ‘고품질 특허심사 서비스’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정책 고객의 요구를 감안하여, 심사정책의 패러다임을 심사처리기간 단축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고품질 특허심사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하였다. 이를 위해 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요소인 심사인력 증원 및 심사관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4차산업혁명 기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융복합기술심사국(‘19.11월)’ 및 ‘반도체심사추진단(‘23.4월)’을 신설하고, 산업 현장의 퇴직 전문가를 심사관으로 채용하여 심사역량을 보강하는 한편, 심사 전 단계의 출원인-심사관 소통을 강화한 심층면담·일괄심사 등 출원인 맞춤형 심사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20년과 ’21년에는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가 위기상황 속에서, 감염 확산 방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심사체계를 유

지하기 위해 심사관의 한시적 재택근무 추진, 영상·전화면담 활성화 등 비대면 업무 시스템을 강화하였다.

특허청의 이러한 노력은 기술 경쟁력을 갖춘 강한 특허의 안정적인 권리화를 지원함으로써, 불필요한 특허로 야기되는 소모적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나아가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아울러, 국내외 출원인들에게 선진국 수준의 고품질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최고 지식재산 행정기관으로서 특허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특허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출원 지속 증가에도 적정기간 이내 특허 권리화 지속 추진

우리나라 특허 출원규모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특허 심사인력은 주요국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으로 많은 양의 심사물량을 처리하고 있어, 특허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가 182건('22년)으로 주요국인 미국 67건, 유럽 63건, 중국 91건 ('20), 일본 176건에 비해 매우 높다.

그러나 특허고객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빠른 심사처리를 통한 조기 권리화를 선호하고, 특히 심사처리기간을 11.7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시 GDP 1.3조원 증가 효과가 나타난다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연구결과('13년)에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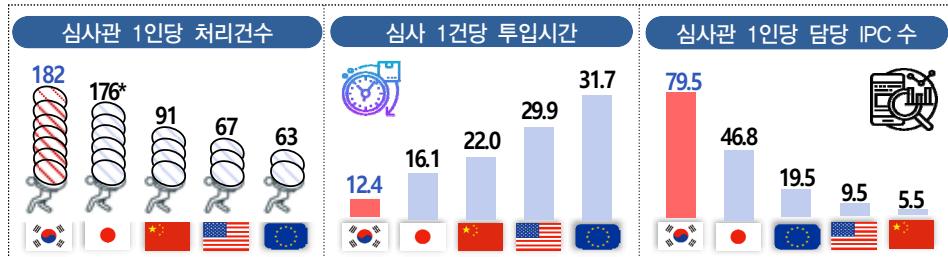
알 수 있듯이, 안정적 심사처리기간의 유지는 중요한 과제이다. 한편, '19년 800여개 기업·공공기관 설문조사 결과(출처: 「출원인 수요를 반영한 적정 특허심사처리기간 도출 및 영향 분석-대안마련 연구」, 지식재산연구원, '19년)에 따르면, 64.3%가 일반심사 7~9개월 수준의 심사처리기간을 원하고, 14개월 이상의 처리기간을 선호하는 출원인은 약 2%에 불과하였다.

특히, '20년 및 '21년에는 심사청구기간 단축(5~8년, '17.3.1 특허법 시행) 및 국내 특허·실용신안 출원 증가(전년대비 '19년 3.8%, '20년 3.3%, '21년 4.4%)로 심사청구량이 급격히 증가하여(전년대비 '19년 1.3%, '20년 21.0%, '21년 3.7%) 심사처리기간 지연을 최소화 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한 시기였다. 뿐만 아니라 '20년 및 '21년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상황 속에서, 감염 확산 방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심사 행정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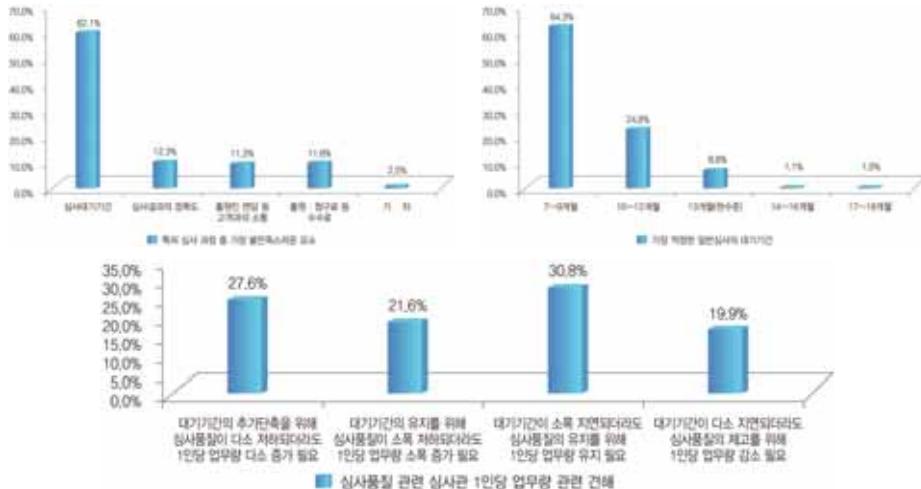
심사처리기간이 지연될 경우 그 여파가 여러 해에 걸쳐 누적되므로, 특허 권리화 지연에 따른 우리기업의 경쟁력 약화 및 출원인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심사처리기간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관의 업무량을 급격히 늘릴 경우, 주요국에 비해 과다한 1인당 처리건수가 더욱 증가함에 따라 1건당 심사투입시간이 줄어들어 심사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 그러나 특허고객은 심사의 적시성뿐만 아니라 심사 품질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현재의 어려운 심사 처리환경 속에서 심사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심사처리기간을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

< '22년 주요국 특허청 심사처리 환경 종합 비교 >

(中은 '20년 수치)



* 日은 심사지원사업 기여도가 높아(韓의 6.4배), 실질 처리건수는 韓의 절반 수준



'22년에는 이러한 어려운 심사 처리 여건을 극복하면서 심사 품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심사인력 증원에 힘썼다. 또한 일반 심사관의 업무량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심사 관리 인력 및 심사 유관부서 등의 심사 정책·지원 인력이 심사업무를 일정량 부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심사관에 한하여 초과물량을 처리하는 등 전사적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 특허청 심사관과 선행기술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조사기관

조사원의 한시적 재택근무를 적극 추진하고, 출원인에 대한 영상·전화면담 활성화 등 비대면 업무체계를 '21년에 이어 지속 유지하였다.

그 결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출원량 및 청구물량,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심사 업무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미국(14.8개월, '20)·중국(14.4개월, '20) 수준의 특허 심사 처리기간(14.4개월)을 달성하였다.

아울러, 앞서 설명한 800여개 기업·공공기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19년), 출원인들은 빠른 심사처리기간을 요구하는 한편, 심사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심사품질 유지를 위해 심사관 업무량을 유지 또는 감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절반 정도로(50.7%) 나타나, 심사처리기간과 함께 심사품질 또한 중요하게 생각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정된 심사자원下에서도 심사의 적시성을 유지하면서 심사품질도 높일 수 있는 심사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겠다.

2) 국내 주요산업 특허지원을 위한 핵심 분야 중심의 특허 심사역량 확보

'23년 3월(1차)과 '24년 1월(2차) 두 차례에 걸쳐 특허청은 반도체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술전문가 총 67명을 전문임기제 심사관으로 채용하였다. 특정 분야를 타겟으로 한 상당 규모의 전문임기제 심사관 채용은 최근에는 보기 어려운 인력증원 방안이다. 이와 같이 채용된 반도체 전문 인력은 한 달여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즉시 심사 업무에 투입되어 반도체 분야의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고품질 심사 서비스 제공에 일조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사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심사처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의 심사관을 확보함으로써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전체 심사처리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다. 주요국은 이미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저마다의 방법으로 상당한 수의 심사관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였다. 우리 특허청도 양질의 심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번 반도체 전문임기제 심사관 채용은 기존의 심사인력 확보 방안과 비교할 때 여러 장점을 갖고 있다.

우선 일반직 공무원 채용이 아닌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이라는 점에서 행정인력 증원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방안이라 하겠다. 덧붙여서, 현재와 같은 기술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채용 방식에 해당한다. 다른 주요국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심사역량 확보가 이루어졌는데, 일본 특허청은 이미 '04년부터 임기제 심사관을 도입하여 전체 심사관의 30%를 임기제 심사관으로 활용 중이다. 중국 특허청도 전체 심사관의 80%에 해당하는 특허심사협력센터(专利审查合作中心)의 심사관들을 임기제 심사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뒤늦게 유럽 특허청도 '18년부터는 임기제 심사관을 채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채용은 단순히 반도체 전문가를 심사관으로 채용하는 것보다는, 반도체 분야 퇴직기술자를 심사관으로 채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퇴직기술자는 현장기술 경험이 풍부한 기술 전문가이므로, 특허심사의 가장 핵심 요소인 '진보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제격이라 할 수 있다. 특허법은 진보성 판단에 있어 '통상의 기술자'의 관점에서 해당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특허로 보호해야 할 기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통상의 기술자란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상식을 보유하고 있고,

출원발명의 과제와 관련되는 출원 전의 기술 수준에 있는 모든 것을 입수하여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자로서, 실험, 분석, 제조 등을 포함하는 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통상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상의 인물'로 정의하고 있다. 첨단기술 현장의 최전선에서 실험·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던 퇴직 기술전문가는 이러한 '통상의 기술자'의 관점을 가장 잘 갖추고 있는 인력으로서 심사업무에 적합한 인력이라 할 수 있다.

퇴직 기술전문가 본인의 역량 자체가 심사에 적합한 것은 물론, 이들의 선행기술 지식이 기존 심사관들에게 공유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 심사관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전체 심사역량이 증진되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19년 융복합기술심사국 신설 이후 지속적으로 협의심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기술 노하우 전수는 개별 교육 이수 등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협의심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퇴직 기술전문가의 해외 이직을 억제하여 기술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주요국 간 첨단기술 분야 인력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특히 국내 첨단기술 인력은 중국의 주요 타겟이고, 반도체 분야의 경우에는 최근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해외 인력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노후 대비는 어려운데 퇴직이 임박한 한국 기술자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타겟이 된다. 더 큰 문제는 인력유

출은 곧 기술유출이라는 사실인데, 산업부 ('21)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기술유출의 46%는 퇴직 인력을 통해 발생한다. 국정원('18)에서도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은 45%가 인력 빼내기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따라서 핵심산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인력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퇴직이 임박한 기술자에 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해외 이직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심사관 자리가 퇴직 기술전문가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지 않고 국내에 머무르도록 하는 하나의 기술유출 방지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채용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한 반도체 기업의 인사담당자는 “기업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인만큼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달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채용경쟁률도 뜨거웠는데, 기존 채용 경쟁률이 2:1, 3:1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반도체 심사관 채용 경쟁률은 1차 6:1, 2차 5:1을 기록하여 시장 수요에 딱 맞는 시의성 있는 정책이라는 평을 받았다.

이와 같은 반도체 분야 외에도 점차 한국의 주력 산업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신속심사 등 특히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 기술인력의 유출 문제는 반도체 분야 외에 이차전지 분야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특허청은 이차전지 분야의 전문임기제 심사관 채용을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기술분야별로 특허 출원 증가율, 심사처리기간, 심사인력 현

황, 퇴직인력 분포, 해외인력 유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한 기술분야를 선정하고, 이러한 기술분야를 우선순위로

하여 지속적으로 심사역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23년 반도체 분야 퇴직인력 심사관 채용 공고 및 홍보 브로셔 〉

3) 특허팀장 중심의 ‘소통형 심사품질 관리’ 및 심사 전문성 제고

‘심사품질관리 혁신’(18.7) 체계 도입으로 종래 평가 중심의 심사품질 관리에서 특허팀장 중심의 소통형 품질관리로 전환하였다. ’19년에는 특허팀장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훈령)’을 제정(’19.5월)하여 ‘특허팀/특허팀장’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특허팀장의 위상을 강화하고, 특허팀장에게 3인 협의심사 품질 관리의 책임을 부여하는 등 특허팀장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 정착을 도모하였다. 또한 유사 산업단위로 특허 식사팀을 확대

(138개에서 152개로)하여 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고('19.11월), 보다 정확한 심사를 위해 응복합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한 특허팀장 중심의 3인 협의심사를 '19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심사품질 제고 효과가 높은 신규심사관을 대상으로 검색, 판단 등 심사 전체 과정을 특허팀장이 심층 리뷰하고 지도하는 '심층리뷰 제도'를 추진('22.4월~)하는 등 팀장 중심의 품질제고 정책을 강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오전 9시30분부터 11시, 오후 2시~4시까지 심사집중시간대를 설정하고 회의 및 보고 등을 자제하는 등의 '집중심사시간제'를 시행하고, 심사과별 대표전화로 외부전화를 응대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22.9월~) 심사관이 심사업무에 보다 집중하여 심사 품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심사 품질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심사 정책 추진, 지속적인 팀장 중심의 소통문화 확산 등으로 소

통형 협의심사 건수가 '19년 2,759건에서 '23년 8,165건으로 증가하는 등 심사 과정의 충실도 지표가 개선되고 대국민수용도 및 등록특허의 안정성 지표가 향상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구분		'19	'20	'21	'22	'23
심사과정의 충실도	특허 1건당 선행문헌 열람 건수(건)	30.9	30.6	31.1	30.0	29.9
	출원인과의 심층면담(건)	3,455	3,946	5,620	6,254	
	심사관 간 협의심사(건)	2,759	5,159	5,542	6,858	8,165
심사결과 대국민 수용도	100 -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율	94.5%	95.6%	95.3%	96.2%	96.2%
등록특허의 안정성	100 - 무효심판청구율	99.62%	99.72%	99.72%	99.72%	99.75%

아울러 ‘격려형 심사 품질관리 체계’의 한 형태로, 심사역량이 우수한 심사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달의 심사관’, ‘심사품질경연대회’, ‘심사명장’과 같은 심사관 포상 제도를 운영하였다. 또한 심사관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심사 품질 향상 효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직급 및 기술분야 심사관이 포상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포상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혁신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포상을 신설하였다 ('20.5월). 특히 심사는 한정된 검색시간 내에 적정 선행기술을 찾아내기 위해 효과적인 검색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집중적인 검색으로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등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검색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검색 과정, 결과, 전략 등 선행기술 검색이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고 검색 노하우를 심사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04년부터 매년 선행기술검색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편, '23년 12월에 개최된 선행기술검색 경진대회는 1년 동안 심사관이 심사하거나, 조사원이 선행기술

을 검색한 건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 노하우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심사관의 일반·협의심사 검색 부문과 조사원의 일반·PCT 검색 부문으로 나누어 개최되었다. 또한 심사관 및 조사원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심사건 또는 조사건 중 임의 선정된 건의 검색전략, 검색이력, 구성대비표를 제출하면, 이에 대해 ① 검색전략 적정성, ② 검색충실성, ③ 검색결과 타당성, ④ 검색효율성 항목별로 평가표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경진대회 결과 '23년에는 총 15명의 심사관과 5명의 조사원을 대상으로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심사관 및 조사원의 심사 역량 강화를 통한 심사 품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4) 특허고객과의 소통형 심사체계 운영

가) 보정안 리뷰

심층면담 제도 중의 하나인 보정안 리뷰는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한 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이 임시로 제출한 보정안을 심사관이 미리 검토하고 면담을 통해 보정안의 거절이 유 해소 여부와 보정방향을 논의하는 면담 제도이다.

보정안 리뷰는 의견제출통지후 의견서 제출 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이 되는 날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보정서 또는 보정안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정안 리뷰는 최초로 도입된 '15년 204건이 신청된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19년 2,406건이 신청되었으며, '23년에는 2,512건이 신청되었다.

나) 재심사 면담

재심사 면담은 심사관이 거절결정한 출원을 대상으로 재심사 청구전에 이루어지는 면담으로 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안을 토대로 심사관과 미리 의견을 교환한다는 점에서 보정안 리뷰와 유사한 면담 제도이다.

재심사 면담은 재심사 청구기간 만료일 30일 이전이 되는 날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보정안 및 설명서를 첨부하여 면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심사의 경우 재심사 청구 시에만 보정서 제출이 가능하며 2회째부터 제출된 보정서는 반려되므로 면담 전에 보정서가 제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이미 보정 나의 제품에 대한 여러 지식재산권을 일괄 확보할 수 있다.

'21년에는 43건의 출원이 포함된 14건의 일괄심사 신청이 있었고, '22년에는 51건의 출원

안 리뷰를 진행한 출원에 대해서는 재심사 면담을 신청할 수 없다.

재심사 면담 또한 '22년에는 830건, '23년에는 1,171건의 신청건수를 기록하였다.

다) 일괄심사

일괄심사제도는 하나의 제품군(서비스 포함)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복수의 특허·실용신안등록·상표등록·디자인등록 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일괄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기업의 사업 전략에 따라서 원하는 시기에 권리화를 할 수 있어, 신제품 출시 시기 전에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일괄심사 신청대상은 하나의 제품군(서비스 포함)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출원으로서 '실시 또는 실시준비 중인 출원',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창업 후 3년 이내 인 중소기업의 출원' 또는 '규제특례 대상 관련으로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한 출원'에 해당하거나, 동일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련된 출원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시장 규모를 고려한 제품 출시 시기 등에 맞추어 하이포함된 21건의 일괄심사 신청이 있었으며, '23년에는 27건의 출원이 포함된 11건의 일괄심사 신청이 있었다.

'23년 12월에는 일괄심사의 신청대상에 '규

제 샌드박스 신청 출원’을 추가하였다. 또한 이전에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일괄심사 신청의 경우 대상이 ‘자기 사용(사용 준비) 중’에

대한 전으로 한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우선심사 신청 사유에 상관없이 일괄심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었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이상과 같이 증가하는 심사물량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우수한 인적자원의 효과적 관리,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기술전문성 중심의 특허심사체계 구축, 팀장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 운영과 소통형 협의심사 추진 등 다양한 품질제고 정책들을 시행한 결과, 심사처리기간의 국제적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고품질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

한편 주요국 수준의 특허 심사처리기간을 유지하면서도 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심사인력 증원을 통한 1인당 심사처리건수의 적정화이다. 앞으로 특허청은 1인당 처리건수를 주요국 수준으로 적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심사인력 증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소통형 공중심사를 통한 외부 전문가 그룹과의 소통을 통해 심사관의 겸색 한계를 보완하고 업계 현실을 심사에 반영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적합 분야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본 제도를 활용하고, 심사국의 기술분야별 지식재산 협의체 등을 통해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심사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심사全 단계에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협력하며 궁극적으로 고품질 특허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보정안리뷰, 재심사 면담 등 맞춤형 심사서비스는, 특허고객들에게 인정받는 소통형 심사협력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특허고객의 지식재산 정책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

업현장 및 특허 업계의 목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이고 현장과 꾸준히 소통하며 특허 심사 행

정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3. 산업·특허 동향 분석을 통한 심사역량 강화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총괄과	공업사무관	모 규형
---------	---------	-------	------

가. 추진배경 및 개요

4차 산업혁명, 기술패권 경쟁 등 우리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의 생존과 국가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특허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그동안 특허청은 융복합심사 전담조직과 산업혁신지원팀을 신설(‘19.11.)하여 특허심사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부상을 대비하였으며, 심사과별 기술연구회 운영, 특허청-산업계 MOU 체결 등을 통해 특허심사와 산업현장이 서로 괴리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왔다. 하지만 특허청 심사관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하는 ‘공정한 법률적 판단자’는 물론 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의 강한 특허창출과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산업혁신가’로서의 역할강화 요구는 여전하였다.

이에 특허청은 특허를 통해 기술발전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본연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산업 맞춤형 심사혁신」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산업 맞춤형 심사혁신」 사업은 심사관 주도로 소관분야의 산업·특허·심사동향을 연

계분석하고, 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산업별 차별화된 기술특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맞춤형 심사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3년에는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가상현실스포츠, 반도체 초미세공정, 디지털 치료제, 이차전지 차세대 음극재 등 15개 분야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특허 경쟁력 및 주요국 심사동향과 심사실무 차이점을 파악하고, 강한 특허 창출 지원을 위한 특허성 판단기준 수립·선행기술 검색역량 강화 등 심사실무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상현실 스포츠 분야에서는 세부 기술별 주요국 특허경쟁력 분석을 통해 국내 산업의 강·약점을 확인하고, 강점 분야의 해외 특허권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심사기준 수립 및 추격 분야의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포지티브 심사 방안 등 심사 개선점을 도출하였고, 태동기 산업인 디지털 치료제 분야에서는 명확한 기준이 미비하여 특허획득이 어렵다는 산업계 목소리를 반영하여 향후 해당 분야 심사기준 제정을 위한 기초 방향을 수립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이상과 같이 「산업 맞춤형 심사혁신」 사업을 통해, 특허팀의 소관 산업분야에 대한 기술적 이해 증진을 기반으로 해당 산업계의 기술특성이 반영된 심사정책을 직접 수립하는 등 산

업지원 관점의 심사역량 강화를 달성할 수 있었으며, '24년에는 분석 절차 및 지표를 개선하여 산업·특허·심사동향 연계분석의 효율성·효용성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산업별 심사정책 수립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4. 특허분류체계의 활용범위 확대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총괄과	공업사무관	고 원 규
---------	---------	-------	-------

가. 추진배경 및 개요

특허분류체계는 방대한 양의 특허문헌을 일정한 기술적 특징에 따라 분류하는 체계로 특허심사관 업무분장, 특허심사의 일부인 선 행기술 검색, 특허동향 분석 등에 활용된다. 특허청은 2015년부터 국제특허분류(IPC)와 함께 IPC를 보다 세분화한 선진특허분류(CPC)를 도입하여 특허행정에 활용해 오고 있다.

CPC는 신기술을 반영하는 속도가 빠르고 (연 4회 개정) IPC 코드 수의 3배가 넘는 코드를 가지는 매우 세분화된 분류체계이다. CPC 코드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정교한 선행기술 검색과 특허 빅데이터의 세밀한 관찰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며 특허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심사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다.

특허청은 '19년부터 5G 통신 표준기술문현 중 심사관의 활용 정도가 가장 높은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이동통신 표준화그룹)의 문현에 대해 CPC 코드를 부여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응복합 기술분야의 특허문현을 효율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17년에 新특허분류체계(Z코드), '21년에 한국형 혁신특허분류체계(KPC) 및 '24년에 녹색기술분류체계와 같은 자체 특허분류체계를 도입하였다.

새로운 특허분류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22년 특허청은 KPC의 설계분야를 확대하고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KPC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망 기술분야 출원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해 Z코드 구축 분야를 확대하였다.

표 II-1-1 특허분류체계 비교

분류체계	관리국	제정년도	코드 수	특징
IPC	WIPO*	1968년	7만 8천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특허분류체계 · 세분화가 부족, 검색 효율성 저하
CPC	미국·유럽	2013년	26만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유럽이 공동 개발한 분류체계 · IPC를 기초로 코드 세분화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9년에 3GPP의 기술분과 중 무선접속망(RAN) 분야의 워킹그룹(WG1) 내 30,889건의 표준기술문현 CPC 코드 부여를 시작으로, 매년 수만 건의 표준기술문현에 CPC 코드를 부여하고 있으며, '21년에는 대상 기술분과를 서비스 및 시스템(SA) 분야로 확대하여 '23년 말까지 231,658건의 표준기술문현에 CPC 코드를 부여하였다.

한편 KPC 구축 및 활용기반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1년부터 양자컴퓨터(G06N), 웨어러블 로봇(B25J) 등 24개 기술분야, 577개 KPC 코드를 설계하고, 신규문현 분류 및 기존문현 재분류를 실시하였다. 무선자원 할당(H04W) 분야의 KPC 코드는 국제표준화를 완료하여 KPC의 국제적 확산 및 KPC 분류 예산 절감의 효과를 얻어냈으며, 수소 기술과 같이 관련 CPC 코드가 여러 개소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코드들을 하나의 KPC그룹으로 재정의하는 인벤토리형 분류코드 설계를 통해 검색·활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와 더불어 기존 특허문현 KPC 분류 데이터의 검색시스템 탑재 및 심사관 검색시스템(KOMPASS) 개선을 통한 분류검색 기능 구현을 완료하였다.

新특허분류체계(Z코드) 또한 확대 및 개편을 계속하여 '22년에 블록체인, 스마트제조 및 3대 신산업(Big 3) 분야 중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기술에 대한 분류코드를 추가 설계하였으며, '24년에는 녹색기술분류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친환경 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다. 특히청은 우리 주력산업 분야 출원의 우선심사 대상 선정을 통한 신속한 특허 획득과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특허분류체계의 활용을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각종 기술문현들을 그 기술적 특징에 따라 세분화하여 분류함으로써, 선행기술에 대한 분류검색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여 특허심사품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CPC 코드가 부여되는 표준기술문현의 범위를 3GPP 이외 다른 표준화기구까지 확장하여 DB를 구축하는 한편, 표준기술문현 등에 대한 효율적인 분류검색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특허분류체계의 활용성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향후 우리 산업 특성이 반영된 KPC 코드 설계 시 최근 기술발전 추세나 국내/외 산업 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상 기술분야를 선정함으로써 KPC의 활용 효과를 극대화하고, Z코드 설계 시 산업 통계에의 활용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5. 심사지원사업 품질관리 강화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총괄과	공업사무관 공업주사	이준영 김명웅
---------	---------	---------------	------------

가. 추진배경 및 개요

특허청은 '92년부터 심사관의 심사부담 경감을 위해 특허심사업무의 일부인 선행기술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특허심사를 지원하여 특허심사의 품질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허법 제58조

및 실용신안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특허·실용신안 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지정·등록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I-1-2 특실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현황

연도	신규 지정·등록 특실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98	(재)한국특허정보원**
'05	(주)월스, (주)한국IP보호기술연구소*
'08	아이피솔루션(주)*
'17	나라아이넷(주), 디알피솔루션(주), (주)명유, (주)아이펙스, (주)토탈리프, (주)케이티지
'18	(주)프로키온, (주)아이피진*
'20	(주)인프, 세종기술경영연구원(주)*
'21	(주)티디야, (주)서치온*

* (주)한국IP보호기술연구소, 아이피솔루션(주), 세종기술경영연구원(주), (주)서치온은 자진 요청으로, (주)아이피진은 폐업('20.8)으로 등록 취소('23.12. 현재 11개 전문기관 등록)

** '22.8월 기관 분리 및 법인 신설에 따라 (재)한국특허정보원은 (재)한국특허기술진흥원으로 변경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7년부터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경쟁체제의 강화를 통한 조사품질 제고를 위해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17년 3개였던 전문기관은 대폭 확대되어 '23년 기준 11개 업체가 전문기관으로 등록되었다.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 선행기술조사

사업은 당해 연도 심사처리건수의 일정 비율을 대상으로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3년에는 375억 원을 투입하여 10만여 건(심사처리건수의 56.4%)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였다.

표 II-1-3 특허 선행기술조사사업 추진 실적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심사처리건수	177,145	166,908	177,465	190,831	181,417	175,743	180,256
용역건수	87,594	105,589	100,737	97,890	99,469	101,556	101,720
용역비율(%)*	49.4	63.3	56.8	51.3	53.6	57.8	56.4
집행액(백만원)	32,778	36,774	33,825	34,454	36,757	37,491	37,561

* 용역비율 = (용역건수 ÷ 심사처리건수) × 100

'22년에는 선행기술조사 사업과 관련한 심사관 불편사항을 상시 접수·처리해온 헬프데스크를 조사원까지 확대하고, 조사원 대상 정기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원의 업무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특허 선행기술조사의 품질과 심사관 만족도를 향상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23년에는 용역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규 전문기관이 기존 전문기관과 공평하게 평가받고 실제 업무수행 역량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평가 체계를 개선하였으며, 선행기술조사원이 매년 신기술 및 지식재산권제

도 등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전문성 및 조사품질을 제고하였다.

한편, 특허청은 외국으로부터 의뢰되는 PCT 국제조사를 적정 기한 내에 처리하고 PCT 국제조사보고서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09년부터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국제조사의 경우 전건이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용역을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23년에는 약 157억원을 투입하여 국제조사 30,700건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였다.

표 II-1-4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현황

연도	신규 지정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09	(재)한국특허정보원*
'13	(주)립스, (주)케이티지

* '22.8월 기관 분리 및 법인 신설에 따라 (재)한국특허정보원은 (재)한국특허기술진흥원으로 변경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선행기술조사 사업은 심사 업무의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을 향상시켜 특허 심사처리기간 및 심사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특허청은 심사관의 심사처리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평가 체계 개선 등 용역사업 품질 제고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6. 특허심사 국제협력 강화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제도과	방송통신사무관 공업사무관 공업사무관	이다나 박성철 윤연숙
---------	-------	---------------------------	-------------------

가. PCT 심사 서비스

PCT 심사서비스는 우리나라 특허청을 PCT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선택한 출원인들에게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이다.

국제조사업무는 국제출원 발명과 관련된 선 행기술을 검색하고 이에 대한 특허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제공하는 업무이다. 그리고 국제예비심사업무는 출원인에 의한 임의 선택적 절차로, 국제조사 결과를 받아본 후 특허획득 가능성을 다시

판단받기 원하는 경우,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예비적인 심사업무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제공하는 업무이다.

어느 특허청이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업무를 수행할 것인가는 국제출원을 하는 수리관청에 따라 정해지는 관할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중에서 출원인이 선택하게 된다.

'23년 말 기준으로 총 25개의 국제기관이 있으며, 우리청은 '97년 9월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되어 '99년 12월부터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II-1-5 국제기관(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현황

오스트리아('78, '78), 유럽특허청('78, '78), 일본('78, '78), 스웨덴('78, '78), 러시아('78, '78), 미국('78, '78), 호주('79, '80), 중국('92, '94), 스페인('93, '93), 대한민국('97, '99), 캐나다('02, '04), 핀란드('03, '05), 브라질('07, '09), 노르딕('06, '08), 이스라엘('09, '12), 인도('07, '13), 이집트('09, '13), 칠레('12, '14), 우크라이나('13, '15), 싱가포르('14, '15), 비세그라드('15, '16), 터키('16, '17), 필리핀('17, '19), 유라시아('20, '21), 사우디아라비아('23, 미정)

* ()에서 첫 번째는 지정연도, 두 번째는 시행연도임

* 노르딕은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의 연합 특허청, 비세그라드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의 연합 특허청, 유라시아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등 유라시아 8개국 연합 특허청

PCT 가입국은 총 157개국이고, 각 가입국은 수리관청을 지정하고 있으며, 각 수리관청은 업무 중인 24개 국제조사기관 중 하나 이상의 관할 국제조사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출원인은 PCT출원을 접수한 수리관청의 관할 국제기관 중 해당 PCT출원의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 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22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관할 국제기

관으로 선정한 수리관청은 미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UAE, 멕시코, 콜롬비아 등 총 21개이다.

'2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는 29,273건의 국제조사를 의뢰받아, EPO, 중국, 일본 특허청에 이어 4번째로 많은 국제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의뢰건 중 7,928건이 외국 출원인의 PCT 출원으로 이를 통해 약 708만 달러의 외

화를 획득하였다.

한편, 특허청은 국내 출원인의 PCT 이용 확대와 편의 제고를 위해 내국인 대상의 PCT 설명회를 '23년까지 WIPO(세계지식재산권기

구)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향후에도 연례적으로 동 행사를 개최하여 PCT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출원인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표 II-1-6 PCT 국제조사 의뢰 현황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내국	16,865	19,035	20,007	20,645	21,968	21,345
외국	9,574	9,256	8,643	8,637	8,590	7,928
계	26,439	28,291	28,650	29,282	30,558	29,273

표 II-1-7 우리나라의 PCT 국제조사 서비스 제공 대상 국가

필리핀('02), 베트남('02), 인도네시아('03), 몽골('04), 싱가포르('04), 뉴질랜드('05), 미국('05), 말레이시아('06), 호주('09), 스리랑카('09), 태국('09), 칠레('10), 폐루('12), 사우디아라비아('15), 멕시코('16), 콜롬비아('17), UAE('18), 브루나이('19), 캄보디아('20), 라오스('20), 카보베르데('22)

나. 특허심사 업무공조(work sharing)

글로벌 경제의 도래와 함께 하나의 발명을 여러 국가에 출원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공통 출원에 대한 국제 심사업무 공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허심사 업무공조는 다른 청에서 먼저 선행 기술을 조사하거나 심사한 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정식 제도로 정착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외에도 특허 공동심사(CSP, Collaboration

Search Program) 등 다양한 시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PPH는 하나의 특허청에서 국내 심사 또는 PCT 국제조사를 통해 특허 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출원에 대해, 다른 특허청에서 그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심사해 주는 제도로, 특허청은 '23년 기준으로 36개국 특허청과 PPH, 34개국 특허청과 PCT-PPH를 시행하고 있다 (PPH와 PCT-PPH를 함께 시행하는 국가가 32개국으로, 전체 시행국가 수는 38개국).

표 II-1-8 PPH 시행 대상 특허청 현황

구 분	대상 특허청
PPH (36개국 특허청)	일본, 미국,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독일, 스페인, 중국, 멕시코, 싱가포르, 헝가리, 오스트리아, EPO, 호주,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대만, 필리핀, 에스토니아, 콜롬비아, 폴란드, 뉴질랜드, 유라시아, 폐루,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브라질, 말레이시아, 프랑스, 인도네시아
PCT-PPH (34개국 특허청)	일본, 미국, 중국, 오스트리아, 노르딕 특허기구,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스페인, 헝가리, EPO, 호주,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독일, 필리핀, 에스토니아, 콜롬비아, 폴란드, 뉴질랜드, 비세그라드 특허기구, 유라시아, 폐루, 칠레, 말레이시아, 프랑스, 멕시코, 인도네시아

'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심사업무 공조 프로그램인 특허공동심사(CSP; Collaborative Search Program)는 특허심사 착수 전 여러 청의 심사관들이 각 청의 선행기술문현 정보를 공유하여 출원인이 여러 나라에서 빠르고 정확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15년 9월부터 한·미 CSP가 시행되었고 '19년 1월부터 한·중 CSP가 시행되어 왔으며, '21년 7월부터 한·사우디 CSP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한·중 CSP는 '20년 12월부터 일시 중단되어 있으며, 재개될 경우 새로운 공지가 예정되어 있다.

캄보디아('19년 11월), 라오스('20년 7월), 브루나이('20년 9월)와 시행중인 한국등록특허 효력인정제도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대국의 특허 출원과 동일한 최선일(우선일 또는 출원일 중 빠른 날)을 가진 우리나라 특허가 등록된 경우, 출원인의 신청으로 우리나라 심사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여 상대국에서의 특허를 등록해 주는 업무공조 프로그램인데, 특허 심사 인프라가 부족하여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의 신속한 특허권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미·일과 협력해 PPH 개선정책 시행

특허청은 2023년 8월부터 미국·일본과의 협력하에 PPH 출원 시 각 심사단계에서의 처리기간을 평균 3개월로 설정하는 「PPH 개선 정책(PPH Improvement Initiative)」을 시행하고 있다.

PPH 출원의 심사 시기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선진 5개 특허청(IP5) 간 논의가 있었았고, 지난해 미(美)·일(日)이 「PPH 개선 정책」을 시행하여 각 심사단계에서의 처리기간을 3개월 이내로 설정하였다. 우리나라 특허청도 2023년 6월 한·미 지식재산권분야 심화협력 업무협정(MOU)을 계기로 이 정책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하였고, 상호주의에 따라 이와 동등한 서비스가 제공한다.

한국·미국·일본 외에도 여러 국가들이 개선 정책에 합류할 경우,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은 각국의 심사 시기를 예측하기 쉬워진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자사의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세계시장 진출도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PPH로 우선심사하는 경우 최초 심사통지 발송을 4개월 이내로 관리하였으나, 이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앞당겨 관리하기로 하였다. 또한 출원인이 답변서를 제출한 뒤 다음 심사통지를 하는 기간도 3개월 이내로 관리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다. 앞으로 한국·미국·일본에 PPH를 신청한 출원인은 빠르면 우선심사결정 후 3개월 이내에 특허 등록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라. 선진 5개 특허청(IP5) 협력

특허청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이 참여하고 있는 선진 5개 특허청(IP5)의 일원으로서 특허심사정책 분야의 국제협력과 특허제도의 조화를 논의하기 위해 매년 실무회의에 참여해왔다.

'23년에는 우리청이 특허심사정책 실무그룹(WG3) 및 특허제도조화 전문가회의(PHEP)를 개최하여, 심사실무, 심사품질, PCT 국제출원, 국제협력심사, 심사관 훈련 등 특허심사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와 IP5 간 특허법·제도 등에 대한 조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23년 실무회의를 통해, IP5는 PPH 통계지표를 매년 발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우리청이 제안한 과제인 'AI 발명자권 관련 IP5 청들의 법제 현황, 판례 및 심사기준 등 자료 공유' 결과물과 'AI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공유' 결과물을 '24년 IP5 청장회의에서 발표한 후 IP5 공식사이트에 게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제2절 상표·디자인 심사 분야

1. 개 관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서기관	윤현진
----------	---------	-----	-----

상표는 자기 상품을 타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으로,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통해 사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19년부터 '21년까지 우리나라의 상표출원은 연평균 13.1%로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나, '22년도부터 감소추세를 보였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도 상표 출원 규모(잠정)가 '21년 대비 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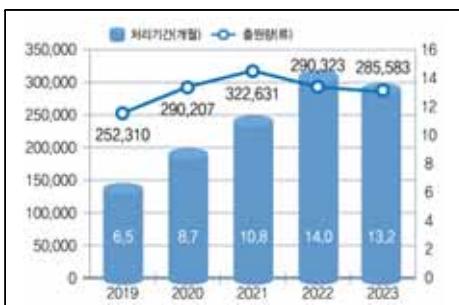
'19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한 상표 출원의 영향으로 상표심사처리기간은 증가하고 있다. '23년 상표심사처리기간은 13.2개월로 '19년의 6.5개월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심사처리기간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심사관 증원, 조사분석사업 추진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을 보호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과 이용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23년 국내 디자인출원은 55,830건이며 코로나19 및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2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다. 출원감소세에 따라 심사처리기간은 4.0개월(전체)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허청은 적정 시점에 심사를 처리하는 것과 더불어 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팀장 중심의 심사품질관리체계

그림 II-1-1 최근 5년 국내상표 출원건수 및 처리기간



를 구축·유지하고 있고,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또한 출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상표 공존동의제와 부분거절·재심사 청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표법을 개정하였다. 관련디자인의 출원기간을 연장하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을 확대하였으며, 우선권 주장 절

차 규정을 개선하여 정당한 디자인권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주요국 법제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이와 함께 '23년 TM5 의장국으로서 상표·디자인 포럼 및 TM5 중간·연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협력도 적극 추진하였다.

2. 상표·디자인의 신속한 권리화 및 심사품질 제고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디자인심사정책과	서기관 행정사무관	윤현진 박미경
----------	---------------------	--------------	------------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상표는 출원인이 출원 당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하기 위해 상품 출시와 동시에 출원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디자인은 대부분 제품의 순환 과정(라이프 사이클)이 짧아 신속한 권리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기에 심사처리가 이루

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신속한 심사처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상표출원건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속한 심사처리가 어려워지고 있다.

표 II-1-9 주요국의 상표·디자인 심사처리기간 현황

(단위 : 개월)

구 분	한국('22년)	미국('22년)	일본('22년)
상 표	13.9	8.3	6.5
디자인	4.8	16.4	6.1

'23년 상표 심사처리기간은 13.1개월로 전년 대비 0.8개월 정도 단축되었으며, 디자인 심사 처리기간은 4.0개월로 전년 대비 0.8개월 단축되었다. 디자인은 제도적 특성이 유사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른 수준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상표 심사 처리기간은 급격한 상표출원 증가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처리기간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1인당 심사처리물량을 늘이는 자구노력과 함께 상표 심사 조직도 신설하였다.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를 '22년 12월에 신규 설치한 것이다. 신설 조직에서는 소상공인 등 개인 출원이 많은 서비스업의 우선심사를 전담하여 처리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신속한 상표권 확보와 상표처리기간 단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다. 심사품질 향상은 제도개선과 심사인프라 확충, 그리고 심사관의 역량 강화가 함께 조화되어야 한다. 특허청에서는 '13년도에 이들 3요소를 포함하는 「상표·디자인 품질제고 전략」을 수립하여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16년도에는 후속조치로 과거 5년간의 상표심사 통계분석을 기반으로 '심사품질관리지수'를 설계하여 이를 성과평가에 반영하였다. 또한 과장 및 팀장 중심의 심사품질 점검회의를 '20년도부터 지속 운영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심사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팀장 중심의 심사품질관리 체계 강화

'20년 3월에는 고품질 심사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통계기반의 상표심사품질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현재 품질관리체계에서는 심사관·팀장·과장 간 소통과 협의가 중요하고, 특히 팀장이 품질관리 중심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과 단위 심사품질관리협의회를 매주 개최하고, 심사관 1인이 결정하기 어려운 심사건에 대해 협의심사를 통해 판단하고 있다. 한편 '20년에는 부정목적 출원 의심건을 보다 정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공동심사를 의무화하였다.

2) 심사인프라 확충 및 심사시스템 개선

빠르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선행 상표·디자인 조사분석 사업, 상품 및 디자인 물품 분류 사업 등 심사지원 사업도 중요하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심사관의 심사부담을 경감시키고

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심사시스템을 도입하여 심사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상표심사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도형 검색시스템을 기존 심사시스템에 탑재하여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 검색기록이 있는 표장에 대한 질의어를 검색 번도에 따라 추천하는 질의어추천 검색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디자인심사의 경우, 인공지능이 출원디자인과 유사한 선행디자인을 심사관에게 추천하는 인공지능 기반 디자인검색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이다.

3) 심사관의 역량 강화

심사품질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심사관의 역량이다. 이에 상표·디자인 심사관의 심사역량을 강화하고자 심사관이 참여하는 심사품질활동보고대회·연구회 운영, 외부전문가 강연, 심사참고자료 발간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시행하였다.

심사품질활동보고대회는 심사품질관리 주체인 심사관-심사팀-심사과 단위 모두가 참여하여 품질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공유·확산하기 위한 품질제고 활동이다. 또한, 상표·디자인 심사품질 점검회의는 심사과장 및 팀장 중심의 연구회로, 심사 정책방향 등을 공유함으로써 심사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학계 및 변리사 등 전문가 강의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등 시장의 환경변화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새로운 정책 및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변경사항

제2편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을 공유하고자 상표·디자인제도연구회(디자인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상표·디자인 법령 및 제도 등에 관

한 심사 참고자료를 발간하여 심사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II-1-10 '23년 상표·디자인 제도 연구회 및 심사품질점검회의 현황

일자	연구회 및 회의 주제
'23년 1분기	제1차 상품·도형분류 연구회
'23년 2분기	생성 AI의 디자인 관련분야 활용현황과 전망 작가가 들려주는 AI아트 작업 이야기 제2차 상품·도형분류 연구회
'23년 3분기	제3차 상품·도형분류 연구회
'23년 4분기	생성 AI와 제품디자인 프로세스의 변화 상표분야 제도 개선 협의체 kick-off 회의 상표디자인 심사품질 점검회의 상표제도연구회 자체학습 세미나 제4차 상품·도형분류 연구회

표 II-1-11 '23년 상표·디자인 심사참고자료 발간 현황

일자	심사참고자료
'23년 2월	상표심사기준
'23년 12월	디자인심사기준

다. 평가 및 발전방향

특허청이 실시한 '23년도 상표·디자인 심사 품질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상표·디자인 심사 분야 종합만족도는 각각 75점대, 78점대를 기록하였다. 특허청은 고객 만족도를 더욱 높이

기 위해 '24년도에도 심사품질관리를 위한 주요 과제를 수립하여 시행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심사처리기간의 지연을 최소화하여 출원인이 상표·디자인권을 적정 시점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표 II-1-12 '23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구분	종합 만족도	기재사항 이해용이성	심사관의 심사 전문성	법 적용의 공정성	심사관 설명 이해용이성	심사관 친절성	제도개선 노력 만족도
상표	75.85	72.80	75.51	76.86	72.37	76.61	79.64
디자인	78.20	76.68	77.63	79.83	77.21	80.15	82.32

3. 상표·디자인 조사분석 등 심사 인프라 개선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상표심사정책과 디자인심사정책과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김기호 정무철 선우한모
----------	--------------------------------	-------------------------	--------------------

가. 조사분석 등 상표·디자인 심사 지원사업 전개

1) 추진배경 및 개요

특허청은 상표·디자인 심사관의 심사 부담을 완화하고 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심사의 일부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출원상표의

의미와 사용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선출원·선등록 상표디자인 등 참증자료를 검색하여 심사관에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국제상표 출원·디자인의 경우 지정상품·물품을 번역하고 분류코드를 부여하여 심사관이 검색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 II-1-13 상품번역, 상품분류, 도형상표 분류 예시

영문상품 번역	digital cameras headphones smartphones		digital cameras(디지털 카메라) headphones(헤드폰) smartphones(스마트폰)
상품분류	(한글상품) 위스키 (영문상품) smartphones		G0602 (위스키, 보드카, 포도주 등) G390702 (무선전화기, 디지털휴대폰)
도형상표 분류			180109 (자동차) 070124 (거주지)

2) 추진내용 및 성과

가) 상표조사분석사업

'03년 (재)한국특허정보원을 상표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본 사업을 시행하여 왔고, '05년 12월에 (주)업스를, '15년 2월에 나라아이넷(주), (주)케이티지를 각각 추가 지정하였다. 한편 '19년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품질 향상을 위해 전문기관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였으며, 상표법 제51조에 따라

일정한 전담인력, 장비, 보안체계 등을 갖춘 경우 상표조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전문기관이 수행할 사업물량은 조사품질 등을 평가하여 물량배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배정한다. '20년 4월에 3개 전문기관(주)명유, (주)토탈리프, 아이피케이(주)이 신규로 등록하였고, '22년 아이피프라임(주), 한백(주), (주)이현아이피, (주)비엠피, (주)서치온, (주)피앤티, 마크포유(주), 위즈원(주) 등 8개 기

관이 신규 등록하였다. 반면, '23년 (주)서치온, (주)한백, (주)마크포유, '24년 (주)아이피케

이, (주)아이피프라임이 등록을 취소하여 현재 총 10개 기관이 등록되어 있다.

표 II-1-14 상표 조사분석사업 추진 실적

(단위 : 건, class 기준)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국내상표조사분석	102,672	98,390	114,454	127,563	151,842	133,858
국제상표조사분석	-	4,962	5,409	6,203	6,202	5,855

특허청은 조사분석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매년 조사원을 대상으로 상표법 이론 및 심사실무 심화교육, 조사품질 제고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세미나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3년부터는 선행 상표 검색위주에서 벗어나 심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조사하도록 사업을 개편하였고, '14년 10월에는 그간 개편된 사업 내용을 제도화하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상표·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한 고시(특허청 고시 제2014-25호)'를 제정하였다. '15년에는 사업물량배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전문기관 간 사업물량 배정의 객관성·투명성을 도모하고, 평가결과가 전문기관 사업물량과 조사원의 개인성과에 연계되도록 하여 품질관

리를 강화하였다. '19년에는 등록제 시행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상표조사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였고, '20년부터는 등록제 도입 이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을 평가전담 기관으로 지정하여 심사관과 함께 평가를 실시하고, '23년에는 고시를 개정하여 품질평가 결과에 따른 물량 차등 배분을 더욱 강화하였다.

나) 국제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번역 및 분류사업

'04년 (재)한국특허정보원을 통한 영문지정상품 국문번역을 시작으로 '09년 영문 지정상품 분류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신속·정확한 고품질 심사 기반을 조성하고 출원인의 상표권 조기 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표 II-1-15 국제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 번역 및 분류사업 추진 실적

(단위 : 건)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영문지정상품 번역 용역건수	14,060	19,521	19,521	19,521	19,235	17,865
영문지정상품 분류 용역건수	98,420	136,647	184,380	184,380	184,380	171,505

다) 지정상품 분류사업 및 도형상표 분류사업
검색의 효율성과 DB 관리를 위해 지정상품

분류 사업은 '08년, 도형분류사업은 '09년부터 각각 시작하였다. 분류 품질을 제고하고 사업

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상품분류와 도형분류의 이론 및 실무 심화 교육, 세미나, 분류 품질점검회의, 특허청 심사관과 전문기관 분류담당자 간의 정기적 교류 등을 실시하여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심사관과 분류담당자간의 분류 결과에 대한 수시 의견 교환으로 오분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II-1-16 지정상품 분류사업 및 도형상표 분류사업 추진 실적

(단위 : 건)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지정상품 분류 용역건수	386,532	392,616	497,614	497,614	604,483	580,639
도형상표 분류 용역건수	70,198	67,494	73,640	73,640	83,758	80,225

라) 디자인조사분석사업

특허청은 '08년 4월 '상표·디자인 전문조사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특허청 고시 제2008-9호)'을 제정함에 따라 해당년도 하반기부터 (재)한국특허정보원과 (주)윕스를 디자인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고, '15년에는 나라아이넷(주), (주)케이티지를 추가 지정하여 총

4개 전문기관이 조사분석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디자인전문기관은 디자인보호법 제59조에 따라 디자인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과 장비, 보안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법인)를 지정하고, 전문기관이 수행할 사업 물량은 사업물량배분위원회를 통해 배정하고 있다.

표 II-1-17 디자인조사분석사업 추진 실적

(단위 : 건)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용역 건수	19,980	23,868	28,519	30,061	28,608	29,208	30,408	29,375	29,443	30,630	25,703

동 사업의 핵심은 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조사원의 역량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디자인보호법과 디자인심사기준 교육과 심사관·조사원 간 간담회, 매년 품질평가 우수 조사원에 대한 포상(표창장 수여)을 실시함으로써 조사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 또한 사업물량 배정에 기관 품질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품질경쟁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

이고 사업물량 배정의 객관성·투명성을 담보하고 있다.

마) 디자인 물품분류사업

특허청은 심사관이 선행디자인을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로카르노 국제분류를 기반으로 한 검색효율성이 높은 고유의 한국 물품분류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 출원디자인에 대해 물품분류코드를 부여하고 있으며,

'16년도부터는 전체 출원건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류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분류전문관, 분류월 등이 참여하여 분류 쟁점 및 개정 검토사항 등을 논의하는 디자인 물품분류 연구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세미나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바) 공지디자인 심사자료정비사업

공지된 최신 디자인을 심사자료로 수집하여 디자인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DB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에 관한 지식과 데이터 가공능력을 갖춘 업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용역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수집대상이 되는

디자인은 첫째, 인터넷을 통해 공개·공지되는 디자인, 둘째, 잡지나 카탈로그 등을 통해 공개·공지되는 디자인, 셋째, 미국·독일·일본·유럽연합·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등의 디자인 등록·공개공보에 수록된 디자인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12년도부터는 이에 더하여 중국 디자인공보와 전통문양 관련 디자인도 심사참증자료로 수집하기 시작하였고, '13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제공받은 캐릭터 디자인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공지증명을 통해 기탁된 디자인을 심사참증자료로 수집·구축하고 있다. 연도별 사업실적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I-1-18 공지디자인 심사자료 수집 정비 현황

(단위 : 건)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외국 공보	일본	25,357	30,311	24,120	30,217	27,052	25,139	24,743	27,890	25,874	25,261
	미국	22,361	28,089	19,883	25,083	31,040	26,882	27,627	33,827	35,597	36,107
	EUIPO	62,684	89,778	48,644	91,065	102,725	75,432	81,475	96,791	74,956	91,034
	WIPO	13,079	20,866	11,968	14,207	15,383	17,923	14,954	22,210	18,865	20,474
	독일	30,788	52,585	45,489	33,289	43,670	37,570	41,625	32,715	32,423	25,939
	중국	41,747	23,748	45,385	37,049	51,187	101,569	99,492	53,314	62,259	60,168
	소계	196,016	245,377	195,489	230,910	271,057	284,515	289,916	266,748	249,974	261,699
실용신안	2,634	4,837	3,945	4,056	2,960	1,982	2,697	2,525	1,883	1,807	1,098
화상	8,037	4,422	1,349	1,603	3,000	1,682	1,628	1,769	1,518	1,543	1,571
글자체	—	575	400	450	556	483	1,093	670	708	1,216	1,391
카탈로그	20,569	24,626	37,708	24,190	34,519	31,911	29,945	29,438	24,241	23,190	10,507
캐릭터DB	—	6,549	6,221	5,597	5,354	5,924	6,260	4,661	6,058	5,355	5,182
공지증명	—	2,240	438	159	248	449	650	713	541	1,028	473
인터넷 공지	156,160	52,213	81,817	54,835	43,015	50,300	43,380	35,886	38,653	41,439	39,757
국내공보	—	—	—	—	—	—	—	—	886	—	—
합 계	383,416	340,839	327,367	321,800	360,709	377,246	375,569	342,410	324,462	337,277	375,728

표 II-1-19 디자인 심사자료 보유 현황

구 분		수 량	축적기간
국내	디자인공보	1,895,393 건	1960~
	실용신안공보	494,617 건	1999~
해외	일본공보	1,581,487 건	1971~
	중국공보	883,528 건	2010~
	WIPO공보	334,702 건	1998~
	EUIPO공보	1,482,224 건	2003~
	미국공보	544,629 건	2002~
	독일공보	550,771 건	2006~
	과거해외공보	676,892 건	~1999
	카탈로그, 인터넷	5,016,156 건	1980~
기타	화상디자인	189,054 건	2003~
	글자체	39,050 건	2004~
	평면디자인	217,493 건	1960~
	총 계	13,905,996건	

사) 국제디자인 심사기반조성사업

영어로 작성된 국제디자인등록 출원서의 번역과 함께 선행디자인 검색을 위한 한국 물품분류코드의 부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디자인 전문기관을 통해 용역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심사관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국제디자인 1차 심사처리기간 단축과 품질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라) 디자인조사분석사업

이 사업은 디자인 심사의 일부 업무인 선행디자인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전문성을 갖춘 조사인력의 확보와 심사환경의 구축 및 비공개 디자인 등에 대한 엄격한 보안관리가 중요하다. 특허청은 선행디자인 검색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전문기관

에 제공하고,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디자인 심사시스템 기능을 개선하는 한편,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과 특허넷 시스템을 통한 디자인 자료의 전송과 전문기관의 보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23년 심사처리기간은 6.8개월을 달성하였으며 '24년도 이후에도 7개월 수준을 유지하면서 심사품질 향상을 위하여 조사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종합품질점수에 기반한 사업물량 배정 등 품질관리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마) 디자인물품분류사업

우리나라는 '14년 7월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제정을 위한 로카르노 협정'에 가입했고 이에 따라 '15년부터 디자인 공보에 로카르노 분

류를 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로카르노 협정에 가입한 목적은 첫째, 디자인의 물품분류에 대한 국제적 통일화 추세에 부응해 로카르노 분류체계로 전환하고 헤이그협정에 가입하기 위함이다. 둘째,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체계로 인해 해외 디자인권 획득의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한편, 디자인 물품분류 업무는 분류의 일관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출원건수를 외부 디자인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통해 수행하고 있다.

특히 분류 및 검색 효율성 향상 등 심사품질 제고를 위해 '16년 로카르노분류 기반의 한국형 新단일분류체계를 개발하여 '17년 디자인물품분류정의서 작성 사업을 완료하고, '18년부터 '20년까지 디자인 검색DB 재분류사업을 추진하여 특허넷 시스템에 탑재된 전체 디자인 검색DB를 新한국분류로 재분류 하였고 '2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심사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21년 10월 개정 디자인보호법에 근거해 화상디자인 출원이 가능해 짐에 따라 화상디자인 세(細)분류체계를 개발하여 심사에 적용하고 있다.

4. 상표·디자인 분야 국제협력 강화

가. 상표 분야 국제협력 체계 구축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행정사무관	윤민수
----------	---------	-------	-----

1) 추진배경 및 개요

상표제도는 속지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국내에 출원·등록된 선행 상표를 기준으로 심

바) 공지디자인 심사자료정비사업

이 사업의 핵심은 다양한 최신 공지디자인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정확하게 가공 및 분류하여 신속하게 특허청 심사관에게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중국 등 주요국의 디자인공보 자료를 추가로 DB에 탑재하는 등 정확성 높은 디자인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 국제디자인 심사기반조성사업

동 사업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정확하고 신속한 번역 및 분류를 통해, 국제출원제도의 시행을 위한 조약인 '헤이그 협정'에 명시된 12개월의 심사처리 기간을 준수하는 동시에 심사품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특히 정확하고 신속한 번역을 위하여 번역지침서를 마련하고 활용하여 일관성 유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연구회 개최 등 정기적인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오번역·오분류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진출이 활발해지고 해외브랜드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가간 상표제도의 이해와 협력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 한·중·일 협력

한·중·일 3국은 상표 다출원 국가일뿐 아니라, 상표관련 제도와 규범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특허청은 한·중·일 3국 상표전문가회의와 한·일, 한·중 상표전문가회의를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국장급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특허청은 상표 전문가회의를 통해 국가별 제도개선 동향, 최신 상표심사 이슈, 심사동향에 대해 공유하고 상표법 개정 및 심사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일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상표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상표 제도 분석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의견은 양자회의를 통해 해당국에 제안하고 있다.

3) WIPO 협력

특허청은 WIPO가 주재하는 각종 회의에 참여하여 한국 상표제도의 국제적 조화와 한국 출원인의 이익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마드리드 국제출원제도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과 출원인들이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종속성 제도를 완화·축소하는 데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또한, 상표법상설위원회(SCT) 등 WIPO가 주재하는 다양한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 기업과 국민의 의견을 국제적 규범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4) 상표선진5개청(TM5) 활동

특허청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이 참여하고 있는 상표선진5개청(TM5)의 일원으로서 상표제도의 발전과 조화에 힘쓰고 있다. TM5는 상표제도를 선도하는 국제적인 5개 특허·상표청의 협의체로, '01년 미국, 유럽연합, 일본이 참여하는 상표선진3개청(TM3) 협의체를 모태로 한다. 이후 TM3는 '11년 한국, '12년 중국의 참여를 거쳐 '13년부터 현재의 5개청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TM5는 상표 관련 문제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 활동을 수행하며 상표 출원인 및 권리자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라는 지금까지 심사결과 비교 사업, 상품명칭 기재방법, TM5 웹사이트 구축 등의 사업을 주도하였으며, '13년과 '18년에는 TM5 연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TM5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2년 10월 EUIPO(유럽지식재산청)에서 개최한 제10회 TM5 연례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특허청 협력 프로젝트인 '상표침해 인식제고'와 'TM5 웹사이트 관리' 사업에 대해 우리청 진행 상황을 발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23년 TM5 의장국으로서, 상표·디자인 포럼과 더불어 TM5 연례회의 및 중간·실무 회의를 개최하였다. '24년에는 TM5 의장국인 일본에서 개최되는 TM5 중간·연례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5) 평가 및 발전방향

우리나라는 상표제도의 국제 규범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상표제도의 조화 및 발전과 이를 통한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23년 TM5 회의 의장국으로서 성공적으로 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한국 특허청의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특허청은 한·중·일 협력 및 WIPO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코로나19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유지해왔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대면 회의가 재개됨에 따라 더욱 활발한 교류와 소통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나. 디자인분야 국제협력 체계 구축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심사정책과 시설사무관 정부용

1) 디자인법조약(DLT, Design Law Treaty)

가) 추진배경

'05년, WIPO의 '상표·디자인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상설위원회(SCT, 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Trademarks, Industrial Design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에서는 세계 각국의 디자인 보호 법제 및 제도가 서로 달라 출원인의 불편이 크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아했고, 디자인관련 절차의 국제적인 조화와 간소화를 목표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07년부터 '09년까지 각국의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와 분석 등 기초작업(Study on the potential impact of the work of SCT on industrial design law and practice)을 완료하고, '10년부터 회원국간의 협의를 거쳐 디자인법 조약안을 마련하였다.

이 조약안은 상표분야의 상표법조약(TLT)과 싱가포르조약(STLT), 특허분야의 특허법

조약(PLT)과 마찬가지로 각국의 디자인 보호 법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조항을 둘러싸고 국가별, 지역별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크고 작은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디자인법 조약(DLT, Design Law Treaty)은 산업디자인 출원에 관한 간소화된 국제 규범을 마련하고 조약 가입국의 국내법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기위한 것으로서 상표분야의 상표법 조약(TLT, Trademark Law Treaty), 특허분야의 특허법 조약(PLT, Patent Law Treaty) 등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조약안은 출원내용, 대리인 선임, 출원일 인정요건, 신규성 상실의 예외, 창작자 명의의 출원, 출원의 분할, 공개연기, 교신용 주소, 갱신, 기한의 구제, 권리의 회복, 실시권, 명의변경, 성명·주소 변경 등 총 3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약규칙은 출원절차, 권리회복, 실시

권, 변경 또는 정정 등 17개 조항을 담고 있다.

이 조항들 중 대부분 조항은 이미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에 반영되어 있으나, 대리인 선임, 기한경과의 구제, 우선권의 회복, 실시권, 성명·주소 변경 등의 조항은 향후 국내법 반영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22년 12월 말 기준 조약안의 대부분은 합의를 이루었으나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국가 간 이견이 있는 상태이다. '14년 제32차 상설위원회에서 아프리카 그룹 등 개도국측이 전통지식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디자인출원은 이에 대한 출처, 정보 등을 출원서에 기재하고 사전사용 허락을 받도록 하는 조문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 그룹은 디자인법조약은 디자인 출원의 간소화를 위한 절차에 관한 조약이기 때문에 출원의 실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조문의 추가에 반대하였다. 이후 여러 번에 걸쳐 중재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19년 제42차 상설 위원회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시가 디자인법조약 체결을 위한 외교회의 개최를 제안하는 등 한때 합의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했으나 이후 개최된 총회에서 협상이 불발되었다. '20년 제43차 상설위원회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디자인법조약과 같이 회원국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주제는 다루어지지 않았고 총회에서는 일부 회원국들이 디자인법조약에 관한 논의의 진전을 촉구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21년도 특별회원국 총회(2021 extra-ordinary session of the Assemblies of the

Member States of WIPO)에서도 디자인법조약 체결을 위한 외교회의 개최 사안 및 디자인법조약 조정안에 대한 국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코로나 팬데믹 아래 가장 많은 회원국이 참여한 '22년도 WIPO 총회에서는 디자인법조약 성안을 위한 외교회의의 '24년도 개최가 비로소 결정되었다. '23년에는 DLT성안을 위한 특별세션과 외교회의 준비위원회가 열리는 등 회원국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쟁점이 되는 조항에 관하여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대립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교회의에서 논의할 기본문안(basic proposal)을 승인하고 '24년 11월 11일~22일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외교회의를 개최하는데 합의하는 선에서 일정을 마무리했다.

다) 향후 추진계획

현재 디자인법 조약(DLT) 논의는 개도국을 위한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을 위한 조항을 선언문이 아닌 조문에 명시하는 문제와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표현물의 출처를 출원서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신규조문을 조약안에 추가하는 제안을 두고 선진국그룹과 개발도상국그룹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를 지역적으로는 아시아그룹에 속해있으나 디자인제도의 성숙도 측면에서는 선진국에 해당해 기존 개발도상국 및 아시아그룹과 다소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 논의중인 디자인법조약의 세부조문과 현행 디자인보호법간의 차이점의 인식, 향후

조약체결 및 협정가입이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 디자인분야 국제규범 형성과정에서의 역할 등 다양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2) 한·중·일 디자인포럼

가) 추진내용 및 성과

우리나라, 중국 및 일본은 매년 전세계에 출원되는 디자인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 디자인분야 주요국들이다. 한·중·일 3국은 단순한 정보교환의 차원을 넘어서 디자인제도의 국제적 조화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0년부터 매년 '한·중·일 디자인포럼'을 3개국이 순차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이 포럼은 세부적인 연혁으로 볼 때 '09년 제9차 한·중 청장합의에 의해 개최된 한·중 디자인포럼이 한·중·일 디자인포럼으로 확대개편된 것이다. 이 행사는 3국의 특허청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 기업인, 디자이너, 지재권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행사로, 3국의 디자인보호제도의 주요 개정내용과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3국의 디자이너 등 실무자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는 자리이다.

우리나라는 '14년에 「디자인의 보호와 진흥의 조화(Design, beyond protection)」를 주제로 3국의 디자인제도 동향은 물론 디자인을 통한 제3세계 돋기와 일자리 창출사례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했고, '17년에는 「캐릭터 디자인의 보호(Legal protection of character design)」를 주제로 행사를 개최하여 3국의 캐릭터디자인 보호현황과 제도적 조

화, 그리고 국제규범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일본에서 개최된 '18년도 포럼은 '디자인경영을 위한 디자인 보호'를, '19년도 중국 우시에서 개최된 포럼은 '가전제품의 디자인보호'를 주제로 하였다. '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취소되었으나, '21년도에 재개된 포럼에서는 우리나라의 주도로 '디지털 경제에서의 상표·디자인 보호'를 주제로 논의를 상표까지 확대하는 한편,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장과 국제상표협회(INTA)로부터 다양한 연사를 초청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22년도에는 일본 특허청 주최로 「국제경제 확장 및 웹3.0 시대에서의 디자인 보호」라는 주제하에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으며, '23년에는 중국 북경 지식재산연수원(CIPTC)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디자인 보호 기회와 어려움」을 주제로 3국의 특허청 관계자와 한국의 씨제이(CJ), 일본의 미쓰비씨(MITSUBISHI), 중국의 바이두(Baidu) 등 산업체 대표가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 향후 추진계획

우리나라는 한·중·일 디자인포럼을 통해 디자인분야에 있어 3국간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각국 기업 및 디자이너의 디자인보호제도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더불어, 디자인포럼은 3국간 제도개선사항과 발전방향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는 창구로서 역할하고 있으므로 3국 상호간에 정책개발과 제도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24년에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디자인포럼을 개최 예정(9월)이다.

3) 한·일, 한·중 전문가 협력

가) 추진내용 및 성과

우리 특허청은 일본, 중국과 각각 양자 연례 디자인전문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과는 디자인제도간 유사성이 높아 상호 제도적 이해를 높이고 관련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와 일본이 헤이그협정에 비슷한 시기에 가입을 추진한 점, 보호대상의 확대에 있어 시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온 점들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한편 중국과는 일본에 비해 제도적으로 차이가 크기는 하나 양국간의 무역 교류량이나 중국이 세계 디자인출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볼 때, 향후 중국 디자인제도의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한·일 디자인전문가회의의 경우, '14년에는 그 이전과 달리 한·일간에 헤이그협정가입을 앞둔 공동협력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한·일 공동심사결과비교 프로젝트추진에 합의했고 로카르노 국제디자인분류체계에 기반을 둔 신규분류체계의 개발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18년은 일본 측의 사정으로 한차례 회의가 중단되었다가 '19년에 재개되었으며, 의장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던 일본 측의 요청으로 '22년으로 개최를 연기하

였으며, 한 차례 더 문서교환으로 회의를 갈음 하였다. '23년에는 한국 특허청 주최로 일본특허청 대표단을 한국 특허청으로 초청하여, 건축물 디자인 보호, 화상디자인 심사실무,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도, AI 및 메타버스 관련 디자인의 취급 등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관하여 활발히 논의하였다.

한·중 디자인협력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15년 한·중 디자인전문가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부분디자인 및 화상디자인 제도, 분류 정책을 소개하고 디자인분류 실무현황을 공유했으며 '16년에는 중국의 부분디자인제도 도입 등 전리법²⁾ 개정현황 및 헤이그 가입 준비 상황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17년에는 중국의 특유제도와 우선권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였다. 중국에서 이루어진 '18년 회의에서는 매장 인테리어와 관련된 디자인 보호 쟁점, 양국의 디자인 분류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19년 회의에서는 헤이그 협정 가입을 앞둔 중국 측에 우리의 헤이그 제도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우리는 중국의 검색시스템과 전리평가보고서 제도³⁾ 운영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는 자리가 되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한 문서교환방식으로 개최된 '20년 회의에서는 외부에 공표된 중국의 디자인법(외관설계 전리)의 개정내용 중 부분디자인과 국내우선권제도에 관해 상세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한국의

2) 중국은 특허를 크게 전리(專利), 즉 '이익의 독점'으로 표현하며 이를 다시 발명전리(특허), 실용신형전리(실용신안), 외관설계전리(디자인)으로 구분

3) 중국은 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 실질심사없이 등록하며, 권리자 또는 제3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선행디자인 검색 등 실질심사에 준하는 절차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평가보고서를 통해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중

비특허문현자료의 수집현황, 화상디자인제도, 3차원 컴퓨터 모델링출원제도, 헤이그 개별지정 수수료구조⁴⁾에 관한 정보도 전달했다.

'21년도에 온라인으로 개최된 회의에서는 중국의 디자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부분디자인, 국내우선권 등 새로운 제도와 하위법령 개정안 등의 동향을 파악하고, 중국 측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의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심사실무, 공보 발행 등의 현황을 공유하였다. '22년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문서교환으로 전문가회의를 대체했고 '23년에 비로소 대면회의를 재개하였다. 한중 양측 특허청 디자인전문가들은 중국 지식재산권국에서 개최된 회의를 통해 헤이그 국제디자인심사, 부분디자인, 국내우선권과 관련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한편 중국이 '22년 5월 헤이그협정에 가입하

는 것에 대응하여, 우리 특허청은 한국 출원인들이 헤이그 국제출원을 활용하여 중국에 진출할 때에 알아야 할 법제도 동향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적시 전파하는 노력을 수행하였다.

나) 향후 추진계획

우리나라는 디자인분야 국제규범 형성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디자인분야 주요국과의 양자협력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22년 헤이그 협정에 가입한 만큼, 한·중·일 3국간 심사결과 비교를 위한 보다 실무적인 협력이 가능해졌다. '24년 9월에는 한국에서 한·중 및 한·일 전문가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법제도, 심사실무 및 신기술 활용 등에 관한 심도 깊은 정보교환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3절 심판 분야

1. 개 관

특허심판원 | 심판정책과 | 과학기술서기관 | 한·지·혜

특허심판은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의 발생·변경·소멸 및 그 권리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행정심판을 말하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허청 소속의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특허심판은 심사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청구하는 '결정계 심판'(청구인만 존재)과 이미 설정된 권리와 관련된 당사자의 분쟁에 대한 심판으로 당사자간 대립구조를 취하는 '당사자계 심판'(청구인과 피청구인 존재)으로 구분된

4) 국제디자인의 경우 가입국의 실질심사여부 등 제도적 특징에 따라 차등적인 수수료체계를 선택할 수 있음

다. 결정계 심판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과 정정심판 등이 있으며 당사자계 심판에는 무효심판, 취소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이 포함된다.

심판청구건수는 특허 및 실용신안 분야의 경우 '09년 심사전치제도 폐지 및 재심사청구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으로 감소하였다가 '15년 3월 개정 약사법 시행에 따라 본격적으로 청구되기 시작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심판사

건의 증가로 '15년 일시적으로 청구건수가 급증했다. 이후 심판청구건수가 안정화되어 '20년 이후 6천~7천건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23년에는 특허·실용 분야 3,166건, 상표 분야 3,895건, 디자인 분야 316건 등 7,377건의 심판이 청구되었다.

표 II-1-20 최근 5년간 권리별 심판청구건수 추이

(단위 : 건수,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연 도		'19	'20	'21	'22	'23
심판청구건수 (증가율)	특허 실용	4,114 (△19.1%)	3,240 (△21.2%)	3,419 (5.5%)	2,576 (△24.7%)	3,166 (22.9%)
	상표 디자인	4,894 (△3.4%)	4,408 (△9.9%)	4,263 (△3.3%)	3,856 (△9.5%)	4,211 (9.2%)
	합계	9,008 (△11.3%)	7,648 (△15.1%)	7,682 (0.4%)	6,432 (△16.3%)	7,377 (14.7%)

표 II-1-21 최근 5년간 결정계·당사자계별 심판청구건수 추이

(단위 : 건수,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연 도		'19	'20	'21	'22	'23
심판청구건수 (증가율)	결정계	4,646 (△17.2%)	3,520 (△24.2%)	3,701 (5.1%)	2,668 (△27.9%)	3,150 (18.1%)
	당사자계	4,362 (△4.0%)	4,128 (△5.4%)	3,981 (△3.6%)	3,764 (△5.5%)	4,227 (12.3%)
	합계	9,008 (△11.3%)	7,648 (△15.1%)	7,682 (0.4%)	6,432 (△16.3%)	7,377 (14.7%)

국내 민사법원에 제기되는 지식재산권 관련 침해 소송건수는 1심 사건은 '22년 582건이고, 2심 이상 건수도 75건이다. 침해 1심 소송

건수는 '21년 대비 89.6% 증가하여,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침해 분쟁이 첨예해지는 것을 보여 준다.

표 II-1-22 지식재산권 침해소송건수 추이

(단위 : 건수, 접수기준)

연 도		'18	'19	'20	'21	'22
침해 1심		265	261	255	307	582
침해 2심		97	97	100	125	75
대법원		28	35	12	12	20

* 출처 : 대법원 사법연감([HTTP://WWW.SCOURT.GO.KR](http://WWW.SCOURT.GO.KR))

한편, 국내에서는 '16년 1월부터 특허침해소송의 1심, 2심의 관할집중제도가 시행되었다. 전국 58개 지방법원 및 지원에서 관할하던 특허침해소송 1심은 고등법원이 소재한 전국 6개 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복관할 협용, '19.3월 수원고등법원이 신설되면서 전국 5개에서 6개로 증가)으로, 특허침해소송 2심은 특허법원으로 관할집중되었다.

특허심판원은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수요자들의 요구를 감안하여, 당사자계(권리범위확인 심판, 무효심판 등 상대방이 서로 다투는 사건) 심판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특히, 일반 민사법원의 가처분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3~5개월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15년 11월부터 민사법원의 가처분 사건 또는 본안 사건 등에 관계된 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심판결과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3개월 내에 심판을 종결하는 신속심판 프로세스를 새롭게 설계하여 시행하였다. 제도 시행 이후 2,687건이 신속심판 결정되었고, 그 중 2,547건이 평균 142일 이내 심판이 종결되었다.

다만 '15년도에 급증한 당사자계 심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16년부터 연쇄적으로 결정계 심판의 처리가 늦어져 전체적인 심판처리기간이 지연되었으나, 심판청구전수 안정화 및 심판부의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19년 이후 7~8개월대 심판처리기간을 유지하고 있다('21년 7.6개월 → '22년 7.9개월 → '23년 8.4개월).

특허심판원은 신속한 심판과 더불어 고품질의 심판을 지향하기 위해 '16년 심판부 조직을 전문기술 심판부 위주로 개편하였고, '20년 7월에는 기존 11개의 심판부를 36개의 심판부로 확대하는 조직체계로 전면 개편하였다. 별도의 인력 증원 없이 심판장 자격요건을 심사·심판·소송경험을 두루 갖춘 과장급으로 확대하고 독립적인 심판부 수를 확대함으로써 심판체계를 효율화한 것이다. 이로 인해 심판장이 통솔하는 심판관 수가 2인으로 적정화되고 36개 개별 심판부의 기술분야에 맞게 심판사건을 배정할 수 있어, 심리충실성 및 전문성 제고를 뒷받침하는 심판부 구성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22년부터 고난도 기술분야 심판사건, 쟁점이 복잡한 심판사건은 심판경험이 풍부한 국장급 심판장의 지휘하에 전문지식을 구비한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특별심판부에서 처리하여 심판의 정확성을 더욱 높였다.

또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우수심판관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심판제도 개선, 전산 인프라 확충 등 고품질 심판을 위한 환경 구축을 추진하였다.

한편, IP5 주요국은 지식재산권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은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처리기간을 '10년의 24개월에서 '22년의 11.7개월로 12개월 단축하였고, 미국, 유럽, 중국 역시 특허 분쟁사건의 처리를 위해 심판관 증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 특허심판원은 '11년 100명에서 '21년 244명으로 심판관을 대폭 증원하였다.

반면, 특허심판원은 '18년에 심판관 1명을 증원하여 심판관 수가 96명으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해외 심판원에 비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심판관 1인당 심결건수가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한, 구술심리를 확대 시행

('09년 165건→'23년 652건)함에 따라 심판관의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심판관 인력증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인당 심판처리건수 또한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표 II-1-23 심판관 정원과 심판처리기간

구 분		'19	'20	'21	'22	'23
심판관 (명)	특허·실용	72	73	73	73	73
	상표·디자인	24	23	23	23	23
	합계	96	96	96	96	96
심판처리기간 (개월)	9.6	7.8	7.6	7.9	8.4	

마지막으로,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심결취소소송의 결과 특허법원의 심결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특허심판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며 상고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특허심판원의 심결 등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제

소하는 비율은 10% 전후로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21년 10.7%, '22년 11.3%, '23년 9.0%), 이 중 약 75%는 특허법원과 특허심판원의 결론이 동일하여('21년 74.4%, '22년 74.6%, '23년 79.3%), 특허심판의 정확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3년 구술심리를 개최한 사건의 특허법원 지지율은 80.2%에 달해, 구술심리 개최시 품질제고 효과가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비율은 '23년 33.4%를 기록하였으며, 상고심에서 특허법원의 판결을 파기한 비율은 '23년 4.2% 수준이었다.

2. 심판의 신속성·정확성 제고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과학기술서기관 한중섭

가. 추진배경 및 개요

현재의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재산은 국가와 기업, 개인 경쟁력의 핵심원천으로 부각되고 있

으며, 핵심 지식재산의 확보 여부는 기업의 생존 및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고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 분쟁의 신속·정확한 해결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정책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특허심판원은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신속한 심판처리를 위한 제도·실무 개선, 심판 품질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등 심판 인프라 확충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나. 신속한 심판처리 추진

특허심판원은 심판품질을 유지하면서 심판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심판관의 충원이 필요하나, 경험과 역량을 갖춘 심판관을 단기에 확보하기는 사실상 곤란하다. 특허심판원은 한정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일반심판, 우선심판, 신속심판의 3-트랙 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건유형을 구분하여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먼저 처리하고,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충분한 공격과 방어의 기회를 제공하여 심결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1) 신속·우선심판제도 운영

특허심판원은 특허분쟁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심판절차를 3-트랙(신속심판, 우선심판, 일반심판)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신속우선심판 대상이 각각의 규정에

산재되어 있고,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형까지 신속·우선심판사건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23년 7월에 유사한 신속·우선심판 대상을 통합·단일화하고,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상은 신속·우선심판에서 제외하는 개정을 실시하였다.

신속심판은 법원 침해소송이 계류 중인 권리 범위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 사건, 특허출원일부터 3년 6개월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2년 6개월 중 늦은 날을 경과한 거절결정불복심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심판은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첨단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대상으로 정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심결취소소송에서 취소된 심판, 이미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있었던 출원에 대하여 취소심결 후 다시 청구된 거절결정불복심판, 발명(고안)의 명칭만 정정하는 정정심판, 약사법에 따른 재심사기간의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심판, 중소기업이 청구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림 II-1-2 신속심판 표준프로세스



표 II-1-24 '23년 신속·우선·일반심판 심결건수

'23년 심결	특허·실용신안	상표·디자인	합계
신속심판	153	118	271
우선심판	352	137	489
일반심판	2,166	3,985	6,151
합계	2,671	4,240	6,911

2) 신속·정확한 심리를 위한 구술심리 확대

구술심리는 심판의 양 당사자가 심판정에 출석하여 심판관 합의체(심판장, 주심, 부심) 앞에서 구술공방을 하게 하는 심리방식으로, 투명·공정한 심판진행과 함께, 조기에 쟁점 정리가 가능하여 심판관 및 당사자의 사건 이해도를 높여 신속처리 및 심판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10년부터 구술심리 지원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속기사를 확충하였으며, 심판정의 제반시설을 확보하는 등 구술심리 기반을 조성하고, 구술심리 운영방식을 표준화하여 구술심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21년에 마련된 특허심판제도 혁신방안에 따라 '23. 7월부터 구술심리원칙이 도입되어 심판당사자의 개최신청이 없더라도 본안심리 대상이 되는 모든 당사자계 사건에 대하여 구술심리를 개최하고 있다.

(가) 구술심리 기반 조성 및 구술심리 내실화

'10년 이전에는 구술심리를 위한 심판정이 1실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영상 심판정을 포함하여 총6실(대전6, 서울1)의 심판정이 있으며,

인터넷 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해 심판사건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는 심판사건설명회장 3실(대전)을 운영하고 있다.

'14년에 원거리 거주 심판당사자들의 시간 및 비용부담 증가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고자 '원격영상구술심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대전심판정과 서울심판정 간에 원격 영상으로 구술심리를 개최하고 있으며, 많은 당사자를 수용할 수 있는 대심판정을 대전에 개소하였다.

'19.10월 특허심판원 상표·디자인 심판부가 특허심판원 별관(대전 서구 둔산중로에 위치한 교직원공제회)으로 이전하면서, 특허심판원 별관에 대심판정 및 소심판정을 추가 개소하였으며, '21.8월부터는 서울, 대전의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심판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구술심리에 출석할 수 있도록 인터넷 구술심리 제도를 도입하면서, 심판사건설명회장 1실에서 인터넷 구술심리가 가능하도록 마련하였다.

특허심판 절차에 구술심리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이래 구술심리 개최건수는 '09년 165건에 불과하였으나, '23년 652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그림 II-1-3 당사자계 구술심리를 진행하는 심판정



표 II-1-25 구술심리 개최건수

(단위 : 건)

년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구술심리건수	497	526	681	754	652
영상구술심리건수	262	340	436	441	357
영상구술개최율	53%	65%	64%	59%	55%

(나) 영상 구술심리 활성화

특허심판원은 수도권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절대 다수의 심판당사자 및 대리인이 대전에 있는 특허심판원을 직접 방문함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 및 비용부담 등의 고객 불편을 덜어 주고자'13년에 '원격영상 구술심리시스템' 도입을 검토하였고, '14년에 3개월간의 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거쳐, '14년 4월부터 특허심판원(대전)과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역삼동)

영상심판정을 전용망으로 연결한 원격영상구술심리 개최를 시작하였다. 또한 '16년 1월부터 원격 영상시스템을 구술심리뿐 아니라 기술 설명회, 심판관 면담 등에도 활용하고 있다. 원격 영상구술심리제도는 당사자 및 대리

인에게 많은 호응을 얻어 개최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21년에는 인터넷을 통한 구술심리, 심판사건 설명회가 도입되면서 영상방식은 심판고객의 계속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20년부터는 영상(인터넷 포함)을 통한 구술심리 개최가 증가해, '22년 개최한 구술심리 754건 가운데 59%인 441건을 영상으로 개최하였다.

그림 II-1-4 특허심판원 원격영상 구술심리시스템



(다) 표준절차 구축을 통한 고객편의성 제고
 특허심판원은 구술심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10년 구술심리 속기록 및 조서 양식을 표준화하였고, 공개 구술심리의 방청을 원하는 일반인의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에 공개방청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20~'21년에는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방청 일시 중단), '11년부터는 구술심리의 내실있는 진행을 위하여 구술심리에서 쟁점이 될 만한 심문사항을 쟁점심문서를 통해 구술심리 개최 전에 심판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심판사무취급규정에 명문화하여 추진하였다.

또한 '18년에는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비상벨을 설치하고, 청사관리소와의 방호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질

서 문란 등 비상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술심리에 생소한 심판당사자, 대리인 등이 구술심리 진행과 관련된 사항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구술심리 관련 법령, 진행절차 및 유의사항, 구술심리 시나리오 등을 수록한 『구술심리 매뉴얼』을 '10년부터 발간하고 있으며, '21년에도 심판사건 설명회 제도, 인터넷 구술심리 도입 등 새로 바뀐 제도를 반영하여 매뉴얼을 개정·발간하였다.

다. 정확한 심리를 위한 심판역량 강화

1) 심판부 운영

가) 우수 심판인력 확보 및 장기재직 유도
 심판관이 장기적으로 재직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심판관의 전문직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직위에 지정되면 최소 4년 이상 심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3년 말 현재 심판관 전문직위는 19명으로서 심판관의 정원대비 20%에 해당한다. 또한 장기근속 심판관 대상으로 심판품질이 우수한 심판관을 선정하여 별도 포상하여 장기근속을 장려하고 있다.

나) 우수심결문 선정 및 성과평가 반영

특허심판원은 심판품질 제고를 위해 반기마다 우수심결문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다.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심판부에서 자체 선정한 우수심결문 후보 중에서 우수심결문 선정위원회에 상정할 최종 후보를 선정하고, 심판원장·수석심판장으로 구성된 우수심결문 선정위원회에서 우수심결문·준우수심결문을 최종 선정한다. 상·하반기 각 우수심결문 9건, 준우수심결문 8건을 선정하고 있으며, 이를 심판부에 피드백하고 심판관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심판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다) 심판분야 국제협력 강화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갈등의 심화로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10년 한·일 심판전문가 회의를 시작으로 IP5 특허심판원장회의, 한·유럽 상표심판협력회의, 한·일·중 심판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의 지재권 중심기관과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23년은 한·일 심판전문가 회의를 대면으로 재개하고 상표 관련 분쟁이 잦은 중국과 상표

심판 협력체 개설을 논의하는 등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및 빠른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심판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개선

가) 직무 중심의 교육과정 재설계

특허심판원은 심판관의 역량을 키우고 심판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심판관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3년에는 교육 내실화를 위해 기존 교육에 대한 설문과 직무분석을 실시하였고 심판업무에 필요한 법률과 실무 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신규심판관 교육을 비롯한 기존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심결문 작성법 교육 등 3개 교육을 신설하였다.

신규심판관 교육은 교육 시간을 1일에서 5일로 확대하여 기존 과정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과 당사자계 심판 과정을 신규로 도입하였다. 신설된 재전입심판관 교육은 재전입심판관의 빠른 적응을 도왔고, 증거조사 교육의 강화나 심결문 작성법 같은 교육의 개설은 심판관의 직무 역량을 증진하는데 기여하였다.

나) 교육 참여에 대한 유인 강화

심판관의 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심판원장 지정 교육 제도를 마련하였다. 동 제도에 따라 심판관은 심판원장이 지정한 다섯 가지 교육에 참여한 경우 연간 교육실적 상한과 별도의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신규 재전입심판관 교육과 증거조사, 판례동향 세미나, 주요쟁점 토론회가 지정되어 있다.

3) 심판품질 개선 활동

가) 특허법원 및 대법원 판례 분석집 발간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 분쟁의 1차적인 해결 기관으로서 특허심판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특허법원 및 대법원의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다양한 종류의 판례 모음집을 발간했다.

'20년에도 1년간 판결선고된 후 확정된 특허법원 및 대법원 사건에 대한 원·피고의 주장, 심결·판결의 요지 및 소송수행관의 검토의견 까지 쟁점 중심으로 정리한 결정계 심결취소소송 정리집을 발간하였다.

아울러 심사·심판의 활용을 위해 매년 한 해 동안의 상표·디자인 판례를 요약·정리하여 '판결문 요지집'을 발간하고 있다.

나)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특허심판원은 산업재산권 판례를 연구하여 심판품질의 향상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07년부터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을 실시하여 오고 있다. 판례논문 공모전은 처음 특허청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것을 '12년부터 외부 변리사나 로스쿨로 확대하였으며, '13년은 변호사까지 확대, '14년부터는 응모 자격 요건 자체를 아예 폐지하여 누구든지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3년 공모전에서는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우수판례 논문은 특허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 발표회 개최, '우수 논문집' 발간을 통해 청내외 지식으로 공유되고 있다.

표 II-1-26 '23년 특허상표 판례논문 공모전 결과

등급	수상자	소속	분야	논문제목
최우수 (1건)	박선하	생활디자인심사과	특허	균등관계 판단에서 구성변경의 용이성 판단시점 및 의식적 제외여부 판단 기준
우수 (2건)	홍기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특허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청구항 및 확인대상발명의 해석 방법
	엄태민	심판22부	상표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과 '호칭 중점 고려' 원칙
장려 (3건)	손동연	파견 (지식재산위원회)	특허	물건발명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에 제조방법이 포함된 경우 권리범위 해석에 관한 고찰
	이서영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특허	대법원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의 해석을 통한 전용 실시권자의 특허무효 청구인 적격에 관한 연구
	임우택 김병렬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표	일회적 거래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는 상표의 등록출원

4) 심판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가) 심판연구관 제도 운영

심판연구관은 신속·정확한 심판을 위해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다. '23년에는 5명의 심판연구관이 특허분야 각 심판그룹을 전담하여 조사·연구 사무를 담당하였다. 법원 및 주요국 심판원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허심판원은

향후 심판연구관 제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심판연구관 제도는 관련 특허법 개정안이 '20년에 발의되어 '21년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심판의 신속성·정확성 제고를 위해 심판처리 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심판 인프라 개선·확충에 많은 비중을 두고 여러 가지 개선과제들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특허심

판원의 위상이 제고되고, 특허분쟁에서 특허심판의 선도적인 역할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허심판원의 심판품질제고 노력의 결과로 '23년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제소하는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특허법원에서 심결이 취소되는 비율도 '22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다(25.4% → 20.7%).

표 II-1-27 심판원 심결에 대한 제소율 및 심결취소율 현황

연 도	'19	'20	'21	'22	'23
심결취소율(%)	25.6	27.4	25.6	25.4	20.7
제소율(%)	9.4	11.1	10.7	11.3	9.0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심판의 신속성·정확성 제고를 위해 신속·우선심판을 포함하는 3트랙의 심판처리, 심판관의 장기재직 유도, 심판품질 관리활동 및 환류 강화 등 심판부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력심판관 보수교육을 최근 중요 판결 중 심결취소 사례위주의 폐소 원인 분석 및 토론 방식 위주로 진행하는 등 심판관 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판례에 대한 건전한 비판 및 생산성 있는 대안 제시를 통한 심판품질 향상 도모를 위해 특허상표 판례 논문 공모전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심판-조정연계 제도, 적시제출주의 도입 등과 같은 혁신적인 심판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여 심판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그리고,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에서 실시되

는 구술심리가 기술쟁점에 대해 논의된 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심판당사자 입장에서는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실물제품 및 동영상을 이용한 기술내용 파악을 통하여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대내적으로는 구술심리의 확대로 심판의 신속성 및 정확성이 제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제1심 역할을 수행하는 특허심판원의 위상 제고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앞으로 특허심판원은 원격 영상구술심리시스템을 확대하여 실시하는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구술심리 기일 이전에 당사자에게 심문할 사항을 명확히 통지하는 쟁점심문서 사전통지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쟁점에 대한 집중심리로 구술심리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등 각종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계획이다.

3. 심판의 공정성 제고

특허심판원 | 심판정책과 | 과학기술서기관 | 우 귀 애

특허심판원은 심판의 신속성·정확성 제고 노력과 더불어 공정한 분쟁해결 기반 마련, 심판관의 공정한 심판업무 수행을 위한 환경 조성, 외부 전문가의 심판참여 및 심판품질위원회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심판의 객관성, 투명성을 제고하여 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왔다.

1) 심판장 및 심판관 직위 민간 개방

심판장과 심판관을 특허청으로부터만 충원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에 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고 우수한 심판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17년에는 민간 개방형 직위공모를 통해 산업계와 변리업계 현장의 오랜 근무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외부 전문인력을 심판장과 심판관으로 직접 채용하였다. 특허실용신안 분야 과장급 심판관 2명, 그리고 상표·디자인 분야 과장급 심판관 1명을 채용하였으며, 심판관 직위의 민간 개방을 통해 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지식재산권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은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때로는 공정한 경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허심판원은 물적·인적자원이 부족한 심판 당사자가 심판과정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9. 7월부터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

다. '21년에는 국선대인인 선임 신청기간 및 그 지원대상 확대, 신청절차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심판사건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되었다.

국민기초생활 급여수급자, 장애인, 소기업 등의 사회·경제적 약자는 심리 종결 전까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자신이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시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국선대리인이 선임되면, 선임된 국선대리인이 신청인의 심판사건에 대해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특허심판원이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신하여 국선대리인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미 납부한 심판청구료 및 정정청구료를 돌려받게 된다.

'23년에는 특허분야에서 6건, 상표분야에서 25건, 디자인분야에서 1건의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이 있었다.

3) 민간 전문가의 심판품질위원회 참여

특허심판원은 법원에서 심결취소한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는 심판품질위원회를 상표·디자인/기계·화학/전기·통신의 4개 분야로 나누어 매 분기 개최하고 있다.

심결취소의 원인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분

석하기 위해 '23년에는 각 분야별 위원회의 6명 위원 중 3명을 학계·산업계·변리업계 등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였고, 내부위원 중에서도 1명을 해당 심판품질위원회와 다른 기술 분야의 심판관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변리사 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리사 위원은 대한변리사회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다.

'23년에 총 4회에 걸쳐, 총 119건(유사 사례는 통합하여 논의)의 심결취소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검토결과를 심판관에게 환류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기술이나 현장지식이 필요한 기술분야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통한 전문성 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관련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고, 관련 특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1.10월부터 전문심리위원 제도가 시행되었다.

심판장은 심판진행 중에 전문심리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기술 분야의 후보자 중 1명 또는 그 이상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2차·연료전지, 무선통신(5G/6G), 동영상·오디오 압축, 펌테크, 반도체, 로봇제어, 지반안정화, 변속기, 바이오헬스 등 11개 기술 분야에 약 1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판장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은 심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서면을 제출하거나 구술 심리 또는 심판사건 설명회에 참석하여 진술하

는 방법을 통해 심판사건에 참여하게 된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심판관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고, 이를 통해 심판의 질적 수준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3년에는 반도체, 통신 분야 등 8건의 기술적 고난이도 심판사건에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하여 심판관을 조력하였다.

5) 사적이해관계자 회피

특허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허법 등의 심판관 제척, 회피 규정 및 심판관 윤리강령을 제정·적용하여 왔으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23년 심판사무취급규정 개정을 통해 심판관의 지정 및 변경 이유에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추가하고, 직무관련 퇴직자와 접촉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을 개정하였다.

심판관은 담당 사건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하고, 퇴직 당시 같은 심판부에서 근무했던 자가 대리하는 심판사건 등이 이해충돌 심판관에게 지정되지 않도록 전산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강화하였다.

제4절 심사품질 진단체계 고도화

1. 개 관

심사품질담당관	과학기술서기관 시설사무관	남윤권 김인천
---------	------------------	------------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패권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심사처리기간의 단축과 함께 심사품질 제고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고품질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심사품질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심사품질 진단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심사품질 진단체제의 운영을 통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의 심사업무가 법령 및 심사기준 등을 준수하여 수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심사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찾아내어 개선함으로써 고품질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심사품질 현황 및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심사품질 진단을 통한 품질관리 활동 외에도 심사품질 지표분석을 통한 통계적 품질관리를 지원하는 등 심사품질 관리체계의 다변화를 도모하는 한편, 이달의 심사관 등 우수 심사관 선정을 통해 품질관리 노력에 대한 격려와 함께 우수 심사사례를 공유하여 동반상승을 도모하는 품질관리를 추진하고, 심사국의 자체적인 품질관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심사국별 진단결과 및 심사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심사국별 품질진단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심사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사품질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2. 심사품질 진단체제의 운영 현황

심사품질담당관	과학기술서기관 시설사무관	남윤권 김인천
---------	------------------	------------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심사품질 진단체제는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의 심사업무에 대한 자체적인 진단을 통해 부실 심사를 방지하고 심사업무에 관한 제도적 보완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고품질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84년부터 시작된 심사품질 진단체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00년 3월에 '심사평가규정'을 제정하고, '00년 8월에 차장 직할의 심사평가담당관(현재 심사품질담당관)을 신설하였다. 심사품질담당관실에는 품질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품질관이 배치되어 있으며, '23년 12월 말 현재 특허·실용신안 분야(이하 '특

실분야'라 한다) 7명 및 상표·디자인 분야(이하 '상디분야'라 한다) 2명의 심사품질관을 포함하여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심사품질 진단은 심사품질담당관실에 소속된 심사품질관에 의해 실시되고, '심사품질진단규정' 및 '심사품질진단지침'에 따라 이루어진다. 심사품질 진단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 진단과정에 걸쳐 심사품질관이 진단대상 건의 심사관 인적정보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진단이 진행되는 블라인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19년부터 기존의 심사평가체제를 탈피하여 긍정적인 패러다임의 심사품질 진단체제로 개편되면서 심사품질 현황점검, 이달의 심사관 선정 품질진단, 취약부분 기획진단, 전결처리 건 품질진단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품질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이러한 품질진단의 결과가 실질적인 품질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 II-1-29 심사품질 진단의 종류 및 특징

품질진단 종류	진단 목적	진단 대상
심사품질 현황점검	심사품질 현황 점검 및 변화 모니터링	심사과별/분기별 균등 추출된 심사건
이달의 심사관	우수심사관 격려 및 동반상승형 품질관리	심사국 추천/직접지원 후보자 심사건
기획진단	취약부분 점검 및 품질관리 지원	정책적 필요 또는 심사국 요청 사항
전결건 진단	심사관 전결처리건의 품질관리 지원	전결처리 결정서 발송건(발송전 진단)

1) 심사품질 현황점검

전체적인 심사품질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심사품질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21년부터 현황점검 진단을 도입하고, 품질진단 결과를 심사국에 제공함으로써 심사국의 자율적 품질관리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3년에는 특실분야 36개 심사과에 대하여 1,056건을 추출하여 심사품질을 진단하였고, 상디분야는 7개 심사과에 대하여 672건을 추출하

여 심사품질을 진단하였으며, 분기별 품질진단 결과 및 진단사례를 심사국에 공유하여 품질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및 교육자료로 활용하였다.

특히 외부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하위권으로 나타난 '심사관별 진보성 판단편차 및 기재불비에 대한 시각편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황점검 진단과정에서 발견된 149건의 특실분야 진단사례 및 34건의 상디분야 진단사례를 심사국과 공유함으로써 심사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등 고객만족도 제고에 힘쓰고 있다.

2) 이달의 심사관

심사국에서 자체검증을 통해 심사역량이 우수한 심사관을 국후보로 추천하는 한편, 스스로 심사품질을 관리해 온 심사관이 직접지원을 통해 후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사 품질담당관실은 후보자들에 대해 심사품질을 진단하여 분기별로 이달의 심사관을 선정하여 격려하고, 단순히 심사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극적 품질관리에서 벗어나 우수 심사사례 및 심사패턴을 공유하여 벤치마킹을 통한 동반 상승형 품질관리를 추진함으로써 고품질 심사를 지향하는 심사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23년에는 특실분야 176명, 상디분야 32명의 후보자가 참여하여 특실분야 총 20명(분기별 5명), 상디 분야 총 4명(분기별 1명)을 이달의 심사관으로 선정하였다. 후보자가 직전 분기에 종결한 심사건 중에서 특실분야는 후보자 1인당 4건(등록결정 2건, 거절결정 2건)을 추출하여 심사품질을 진단하고, 상디분야는 후보자 1인당 15건(등록결정 10건, 거절결정 5건)을 추출하여 심사품질을 진단한 결과로 선정하였다.

'20년 3월부터 심사국 추천 외에 심사관이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참여경로를 다변화하였으며, '22년에는 직접지원자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직접지원 참여 한도를 특실분야 최대 20명, 상디분야 최대 4명으로 확대하였고, 특실분야는 심사관의 평균착수점수를 기준으로 구간을 설정하여 공평한 경쟁을 통해 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선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3) 기획진단

기획진단은 품질취약부분이나 심사정책의 운영현황 점검 등 품질관리 정책상 필요한 분야를 진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하여 '1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23년에 특실분야는 전년도 현황점검진단 결과 및 심사관 경력제에 따른 승급을 위한 품질 관리 필요성을 감안하여 3년차 이상 책임심사관(67명)에 대한 경력별진단(268건)을 실시하였다. 상디분야 역시 유사판단 등의 판단변복 유형 분석을 위한 판단변복건 진단(372건)과, 정보제공 유형과 활용타당성 분석을 위한 정보 제공건 진단(392건)을 실시하였다. 특실분야 경력별진단 결과는 심사관에게 직접 피드백하여 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심사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각 기획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관련 규정, 전산시스템, 심사경력별 심사관교육, 업무방식 등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반영되도록 추진하였다.

4) 전결건 진단

업무전결규정에 따라 특허팀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심사관 전결로 종결되는 심사건에 대하여 심사품질담당관실에서 품질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심사관의 전결로 처리되는 최종 결정서가 발송되기 전에 추출하여 심사품질을 진단하고, 오류사항이 발견되거나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사관에게 통지하여 이를 치유한 후에 발송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팀장 중심 품질관리체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허팀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종결되는 건에 대하여 심사품질담당관실에서 품질관리를 지원하는 것이다.

'23년에 특실분야에서 총 260건의 심사관 전 결처리 건을 추출하여 심사품질을 진단하고, 그 결과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 6건에 대하여 재검토의견을 심사국에 제공하여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종 결정서 발송전에 심사오류를 치유하고 심사품질 관리의 사각지대를 지원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심사품질 현황점검 진단은 심사과별, 분기별로 균등하게 진단대상 건을 추출하여 전체 심사과정에 대한 심사품질을 측정하고, 진단결과는 청의 심사품질 관리를 위한 기초 데이터로서 심사품질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또한 발굴된 진단사례를 심사국에 공유함으로써 심사관별 판단 편차를 최소화하고 일관된 심사처리를 유도하여 심사품질을 향상하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향후 점진적으로 진단건수를 확대하고 진단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기획진단은 일반적인 심사품질 점검뿐만 아니라 품질관리 정책상 필요한 다양한 심사부분 내지 진단관점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심사품

질담당관실 자체적으로 선정한 것 외에도 심사국에서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심사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함으로써 심사국 맞춤형 품질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다른 진단과 달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심사품질이 우수한 심사관에 대한 격려를 통해 긍정적인 품질관리를 추구하는 이달의 심사관 선발 제도는 심사관의 사기를 진작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심사관에게 품질관리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자율적인 품질관리 분위기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어, 참여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진단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자율적 품질관리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심사관 전결처리 건에 대한 품질진단은 심사오류 사항을 발송전에 치유하여 심사품질을 원천적으로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심사품질담당관실의 진단의견을 토대로 심사팀내의 품질제고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기대할 수 있어 앞으로 품질 중심의 심사문화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심사역량 개발 지원을 통한 심사품질 제고

심사품질담당관	과학기술서기관 시설사무관	남윤권 김인천
---------	------------------	------------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심사업무는 특허청의 가장 본질적인 업무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의 적용 및 해석, 심사기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숙지, 출원인과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통지서 작성능력 등 심사실무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심사관의 업무능력을 배양하여 심사품질이 향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심사품질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심사절차와 정확한 판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심사관에게 교육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여 적극적인 피드백을 통해 심사실무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품질진단 설명회 및 심사사례 교육

매년 품질진단 설명회를 개최하여 심사품질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단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심사품질 진단결과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심사관의 심사역량을 제고하며, 심사팀장의 품질관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품질진단 설명회를 통해 심사품질 진단제도를

포함하여 심사품질 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심사품질관리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한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제공하는 신규심사관 과정, 심사관 승급 과정, 심사지도 과정 등 심사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과정에서 품질진단에서 발견된 심사사례 및 심사품질 관리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설분야 외부 선행기술조사기관의 조사원 교육과정에도 선행기술 활용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외부 선행기술조사원의 선행기술 조사 역량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심사품질 제고에 긍정적으로 이어지도록 힘쓰고 있다.

2) 심사품질관련 주요 통계지표 제공

심사과장 및 심사팀장의 심사품질 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특설분야의 등록률, 무효심판 인용률, 취소환송률,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율, 재심사 청구율 및 등록률 등에 대한 통계지표를 산출하여 제공하고, 상디분야는 착수공고(등록) 결정률, 등록결정률, 무효심판 인용률,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율, 취소환송률, 상표 이의신청 건수 및 인용률, 디자인 신규성·용이창작·확대된 선출원·선출원 위반 지적률 등에 대한 통계지표를 산출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심사품질 관련 통계지표를 산출하여 제공함으로써 샘플 추출에 의한

심사품질 진단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체적인 품질관리 정책을 통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심사과장 및 심사팀장의 실질적인 심사품질 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3) 고객과의 지속적인 소통 노력

이달의 심사관 선정을 위한 진단과정에서 발견한 우수 심사사례를 심사국에 피드백하여 공유함으로써 다른 심사관이 이를 벤치마킹하여 자율적인 품질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달의 심사관 수상자의 심사패턴을 공유하여 자신의 심사패턴과 비교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심사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품질향상 노력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내부 업무공유사이트(코아시스)에 심사품질진단 지침을 게재하고 심사품질진단과 관련된 질의·응답란을 상시 운영하여 심사업무와 관련한 심사지침 및 심사절차와 관련하여 심사관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관련 지침 및 의문사항 등을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심사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외부고객인 대리인과 출원인을 대상으로 심사서비스 품질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고객 입장에서 심사품질 취약점과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심사품질 진단 및 품질 관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품질진단 설명회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심사품질관련 통계지표 제공, 우수 심사사례 및 심사패턴 공유 등의 다양한 품질관리 활동을 통해, 심사관과 심사국의 품질개선 노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체계적인 품질관리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종합적인 심사품질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또한 외부고객에 대한 심사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설문조사 체계를 고도화하여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점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품질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심사국과 심사품질담당관이 협조하여 심사품질 진단과 동시에 다양한 품질관리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심사품질의 중요성을 전체 구성원이 공유하고 실천하는 심사품질 중시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제5절 출원·등록 방식심사 분야

1. 개관

산업재산정보국	산업재산출원과 산업재산등록과 산업재산국제출원과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이영준 김경미 송규형
---------	---------------------------------	-------------------------	-------------------

방식심사는 특허법 등 산업재산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원인·대리인의 행위능력, 제출된 서류의 기재방식 및 첨부서류 제출여부, 수수료 납부사항 등 출원·등록·국제출원 관련 서류의 형식 및 절차에 대한 흠결유무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특허요건 등을 심사하는 실체심사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이러한 방식심사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은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관하여 방식과 절차를 통일함으로써 특허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기 위해서이다.

산업재산출원과, 산업재산등록과, 산업재산국제출원과에서는 방식심사를 통해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의 수리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방식심사 결과 방식에 흠결이 없으면 출원·등록관련 서류를 수리하고,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 등에게 보정의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결이 해소되지 아니하면 해당 절차를 무효로 하는 한편,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준 후 출원·등록관련 서류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하고 있다.

22년 출원·등록 등 방식심사처리건수는 총 방식심사건 중 99.9%를 6일 이내 처리하여 신속·정확한 방식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제고와 더불어 신속한 지재권 창출에 크게

기여하였다.

분야별 방식심사 처리를 살펴보면 첫째로, 국내 출원의 경우 출원방식심사 처리건수는 137만 6천 여 건으로 전년보다 약 4.7% 증가하였다. 이는 특허출원의 증가에 힘입어 '23년 전체 산업재산권 출원이 총 55.7만 건을 기록해 '22년 대비 상승 추세로 전환함에 따른 출원방식심사 대상 서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둘째, 등록 서류의 방식심사 처리건수는 112만 6천건으로 전년보다 약 8.5% 증가하였다. 이는 산업재산권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특허권 등의 권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권리자들이 연차등록료의 납부나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특허협력조약(PCT), 마드리드의정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서류의 방식심사 처리건수는 약 14만 6천 건으로 전년보다 9.6% 증가하였다. 이는 '23년 전체 국제출원 건수 증가에 따른 국제출원 방식심사 대상 서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고품질 지재권 창출을 위해 통합 서식작성기 등 사용자 편의를 제고하여 흠결 없는 서류가 제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표 II-1-29 '23년 분야별 방식심사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국내출원	1,376,303(6.0)	1,448,501(5.3)	1,313,993(△9.3)	1,376,169(4.7)
국제출원	126,826(△0.7)	136,030(7.3)	133,380(△1.9)	146,141(9.6)
등 록	921,964(3.0)	1,007,472(9.3)	1,037,888(3.0)	1,126,588(8.5)
합 계	2,425,093(4.5)	2,592,003(6.9)	2,485,211(△4.1)	2,648,898(6.6)

2. 방식심사 제도 운영

산업재산정보국	산업재산출원과 산업재산등록과 산업재산국제출원과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이영준 김경미 송규형
---------	---------------------------------	-------------------------	-------------------

기술패권경쟁과 보호무역주의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술의 전략자산화가 기업의 생존 및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등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강하고 경쟁력 있는 특허창출을 위한 전 주기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출원 및 등록 단계에서도 고품질의 출원서가 작성되고 신속하게 지식재산권이 획득될 수 있도록 고객지향의 지식재산권 관련제도를 운영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가. 출원분야 제도개선

1) 변리사 무료상담 서비스 실시

명세서 작성 상담 등 출원인들의 민원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한변리사회 소속변리사들을 활용하여 고객지원실 내 변리사 무료상담 서비스를 주 3회 제공함으로써 지식재산권 출원 및 분쟁해결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2) 고객중심의 출원업무 기반을 강화

고객지향적인 특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한 출원 관련 서식 변경사항 및 특허로 시스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한 ‘출원방식심사지침서’를 개정 발간하고 이를 통해 일관된 방식심사 처리 기준으로 특허고객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3) 특허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고품질 출원서비스 제공

중소기업이 특허수수료 감면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증명서류 안내서’를 제작·배포하는 한편, 출원서 등 약 35개 서식에 대해 서식별 표준화 작성 사례, 구체적인 기재요령을 소개한 ‘출원서식 표준사례집’을 통해 산업체재산권 출원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출원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였다.

나. 등록분야 제도개선

1) 서면 등록증 발송조회 서비스 개선

등록 권리자가 서면등록증을 신청한 경우, 기존에는 우체국 등기조회 사이트에 접속해서 등기발송번호를 입력해야만 신청한 등록증의 발송 현황을 조회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등록 신청인이 등기발송번호를 모르는 경우 발송현황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특허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문의를 하더라도, 청 담당자를 통해 발송번호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고객불편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허로 사이트에 등록증 배송조회현황 메뉴를 신설하여 신청인이 본인인증을 거쳐 출원·등록번호를 입력하기만 하면 등록증 발송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2) 직권정정 제도의 활성화

등록신청 서류에 납부연차 오기재, 등록번호 기재란에 출원번호 기재 등의 명백한 단순 오기가 있는 경우, 기존에는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여 신청인이 보정서를 제출하여야만 서류의 정정이 가능하였다.

불필요한 보정에 따른 행정력과 우편비용 및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순 오기의 경우에는 방식심사관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직권정정제도를 활성화하였다.

직권 정정시에는 반영된 내용을 등록 방식 시스템에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록 하였으며, 직권정정대상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 및 매뉴얼을 함께 개정하였다.

3) 연차등록료 등의 납부 안내서 개선

연차등록 납부안내는 권리자가 매년 납부해야 하는 연차등록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 원하지 않는 권리 소멸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납부 기한을 안내해 주는 행정서비스로 우편, 문자, 이메일 등으로 권리자에게 발송해 주고 있다.

기존 안내서는 권리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권리소멸 등 중요사항의 효과적인 내용 전달에 한계가 있고 입금계좌번호 등의 착오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주요 개선사항은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입계좌 등을 중앙 한 곳에 큰 글씨로 제공하여 시안성을 높였고, 권리소멸에 관한 주의 문구를 붉은색 디자인으로 강조하였고, 입금 전용계좌도 눈에 쉽게 띠도록 하는 등 고객 편의성 증진 및 가독성을 제고하였다.

다. 국제출원분야 제도개선

1) PCT 서류 전송방식 및 마드리드 하자율 개선

PCT 국제출원 일부 서류(기록원본 및 우선권서류)의 전송 방식을 수동 전송 방식에서 실시간 전자적 전송 방식으로 개선하였고, 또한 별도로 발송되던 서류(직권정정 통지서 및 기록원본)를 일괄 발송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발송 오류를 방지하고 발송업무를 최소화하는 등

인력 효율화와 더불어 신속·정확한 방식심사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마드리드 하자통지서를 전수 분석하여 불명확한 영문 지정상품 명칭을 개선하는 등 출원인 편의와 하자율 감소를 위해 노력하였고, 국제출원인의 지정국가 진입 시기를 앞당겨 신속한 해외시장 진출 및 권리 확보에 기여하였다.

2) 국제출원 활성화를 위한 동영상 배포

글로벌 시대에 국제출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제출원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배포하였다. 이 동영상에는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의 필요성, 방법 및 국제출원 제도의 장점 등을 소개함으로써 국제출원이 활성화 되고, 인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3) 국제출원 인식기반 확대

출원인에게 최신 국제출원 정보를 제공하고자 PCT, 마드리드, 헤이그 국제출원을 통합한 국제출원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간·배포하였다.

또한, 개인, 기업 및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을 대상으로 국제출원 설명회를 실시하여 고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였고, 지역의 국제출원 인식을 제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특허고객 상담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출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제출원 관련 상담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앞으로도 보다 편리한 국제출원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PCT, 마드리드, 헤이그 국제출원에 대한 적시성 있는 콘텐츠 보급, 설명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3. 방식심사 품질 제고

산업재산정보국	산업 재 산 출 원 과 산업 재 산 등 록 과 산업재산국제출원과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이영준 김경미 송규형
---------	---	-------------------------	-------------------

출원·등록 방식심사 품질제고는 결과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지식재산권 창출을 담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출원·등록 단계의 방식오류로 인하여 서류 제출 기일을 놓치거나, 관련절차가 종료되는 등 출원인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의견 개진 기회도 없이 지식재산권 획득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고 방식심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개선, 방식심사관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성 향상, 통지서 및 시스템 개선 등 방식심사 품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출원·등록 방식심사 평균처리기간은 3일을 넘지 않고 있으며, 국제출원 또한 방식심사 처리를 6일 이내로 유지하고 있다. 방식심사의 정확도도 최근 4년간 99.9% 이상 달성하여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신속·정확한 방식심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특허청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가. 방식 품질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1) 전자계약 서류 관련 심사 지침 제정

등록서류의 원본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전자서명이 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원본으로 인정해야 할지 그 기준이 모호하였다.

산업재산 거래의 활성화 및 관련법령의 취지에 따라 전자문서를 서면서류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되, 진본성과 본인확인이 보증되는 PDF 형태로 문서를 제출하도록 방식심사 지침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고객편의와 업무효율성을 증진시켜, 방식심사의 품질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2) 통지서 및 시스템 정비

보정 요구서, 무효처분 통지서, 서류반려 이유통지서, 서류반려 통지서 등 대민에게 제공하는 통지서 문구를 출원인 입장에서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정비하고, 개정법령 등을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특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산업재산권법령 개정사항을 출

원·등록 관련 시스템에 즉시 반영하여 출원인들이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국민 입장에서 통지서 및 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나. 방식심사관 전문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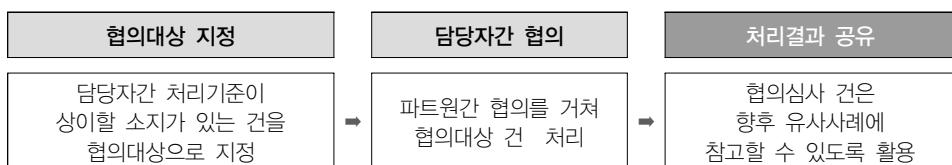
1) 출원·등록 방식심사 연구회 운영

산업재산권 출원·등록·국제출원업무 방식심사 과정에서 출원인이 틀리기 쉽거나 특이한 사례, 관련 규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하거나 자료로 남겨 향후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례 등을 중심으로 연구회를 개최하여 수집된 사례에 대해 문제제기 및 처리방안, 개선사항 등을 논의함으로써 방식심사의 품질향상과 업무의 일관성, 연속성을 제고하고 방식심사 실무에 활용하였다.

2) 방식심사 품질제고를 위한 협업실시

신속·정확한 방식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파트원 간, 파트원-상위결재자 간 기간관리 상황을 교차 확인하도록 하여 담당자 부재 등으로 인한 처리 지연을 예방하고, 담당자 간 판단이 다를 수 있는 사례에 대해 파트 내 협의심사를 통해 그 내용을 공유·활용하여 방식심사의 일관성을 제고하였다.

표 II-1-30 협의 방식심사 절차 및 관리



제6절 심사·심판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1. 개 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기획과 항공사무관 황정범

가. 4대 주요 추진전략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3년에 IP 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의 체계화 및 고도화를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① 우리청의 IP역량 향상을 위한 입체적 교육 체계 구축, ② IP수요자 저변확산을 위한 교육 체질 개선, ③ 디지털교육 활성화를 통한 IP인재양성 기틀 마련, ④ 국제 IP보호를 위한 교육 협력 강화 등 4개의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특히, '23년은 교육효과 증진을 위해 대면 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심사·심판관, 변리사, 학생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과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디지털 교육 콘텐츠와 국제 IP교육도 확대하여 교육의 양적인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도 추구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생수는 전년대비 3.5% 증가하였으며 ('22년 54만명 → '23년 55.9만명), 평균 교육만족도 역시도 90점 이상을 나타내었다.

나.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다가올 글로벌 지식 재산 패권경쟁에 대비하여 세계 최고의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을 비롯한 청내 지식재산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빠른 기술변화와 융복합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6대 디지털 혁신기술(AI, 반도체, 5G·6G, 양자,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특별과정 등의 심사관 맞춤형 과정 및 2023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인사이트 리뷰, 과학수사와 DNA 감식의 이해 등의 신기술 교양강좌를 운영하고, 신기술 기초 및 기술분야별 산업동향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산업 트렌드의 파악을 지원하는 한편, 직원들의 법적인식 제고를 위한 법률교육을 확대하였다. 또한, 반도체 분야 민간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조속한 심사 업무 적용 및 투입을 위한 신규심사관 과정, 심판관 증거조사 교육, 명세서 및 청구범위 작성 실습 과정 등 다양한 지식재산 실무 교육의 신설 및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종합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다. 지식재산 저변확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심사·심판인력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민간·공공 부문 지식재산 업무 종사자의 역량 향상을 위해 타부처·지자체 공무원, 기업·연구소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지식재산 교육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23년에는 공공부문 지식재산 기반 강화를 위해 한국가스공사 등 대학·공공기관 연구자들 307명을 대상으로 대학 공공기관 대상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였고, 타부처 공무원 및 군수지원군인 등 지식재산 실무자 맞춤형 과정을 강화하였으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의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미래 유망기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무교육을 운영하는 등 공공 및 민간부문 지식재산 저변 확산을 위한 교육과정 및 대상을 추가 발굴하고 유관기관과의 교육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라. 디지털 교육 확대

또한, 연수원은 대국민 지식재산 역량 함양을 위해 디지털 환경을 기반으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스마트교육을 통한 지식재산 확산에 꾸준히 힘쓰고 있는데, '23년에는 '22년에 구축된 지식재산 디지털교육 통합플랫폼의 활용 및 확산을 추진하여 디지털 지식재산 교육서비스의 저변을 더욱 넓히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교육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유튜브 동영상(2건)을 제작하여 소상공인이 쉽고 편하게 IP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우리 연수원은 '15년부터 온라인 원격학습을 통해 지식재산학사를 취득할 수 있는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를 운영하여, '23년에는 총 21개 과목에서 1.08만명이 수강하였고, 153명의 학사('22년 143명)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마. 국제교육 협력 강화

끝으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WIPO 및 해외 지식재산권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지식재산 전문가를 양성하고, 개도국의 지식재산 전문 인력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지식재산 선도 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23년에는 '22년 개발 완료한 IP파노라마 2.0을 활용하여 개도국의 우수 IP전문가 과정(AICC) 및 발명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였으며, 교육대상을 심사·심판관 이외에도 지식재산 업무담당자로 확대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405명('22년 383명)의 외국인 교육수료자를 배출하였다.

아울러 국내수출기업 보호를 위해 공관, IP-DESK 및 해외 교육기관과의 상호 협력으로 국내 진입 외국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IP교육을 실시하였고, WIPO 및 ASEAN 등과 지식재산 교육 협력을 강화하고, 독자적으로 국제 IP교육 콘텐츠와 교재를 개발하고 활용 및 확산을 추진하여 글로벌 IP보호 인식확산에 기여하였다.

바. 향후계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 IP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대상별 맞춤형 IP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및 실무 중심의 지식재산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식재산 디지털 교육 통합플랫폼의 활용 및 확산을 도모하고, 사용자 친화적 디지

털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디지털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으로 자

리매김하는 데 이바지 할 계획이다.

2. 실무 중심의 전문 교육과정 운영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식재산교육과 행정사무관 김건우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세계최고 수준의 고품질 심사·심판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심사관 경력별 맞춤형 승급과정, 신기술 교육, 지식재산 법·제도 및 심판관 법률 전문 교육 등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심사·심판 인력의 전문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필수교육인 신규심사관, 선임·책임심사관 승급 및 심판관 후보자 과정은 경력에 맞춰 수준별·단계별로 운영하여 상표·디자인, 기계, 화학, 전기 등 각 분야별로 심사 관련 주요 쟁점 및 심결·판례 연구·분석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심사·심판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심사·심판관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해 사례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이 점점 융복합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심사, 심판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반도체, 양

자, 메타버스, 5G·6G, 사이버보안기술 등 6대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의 특별과정을 마련하였고 단백질 의약품 개발 기술 동향,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동향, 반도체 프로브 기술, 지능형 사물인터넷 핵심기술과 표준화 동향 등 총 63회에 걸친 맞춤형 신기술 교육과정 및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10회에 걸친 신기술 교양과정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내실있고 체계적인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권리별·기술분야별 심사사례 및 심결 판례 연구, 선행기술 조사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기초에서 심화까지 수준별 문제해결 능력 및 심사노하우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심사·심판관의 법률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법 등 주요 법률과목 교육 확대하고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특허법 교육을 이론과정과 쟁점 및 사례과정으로 세분화하여 지식재산 관련 법률 및 제도 교육에 있어 전문성을 향상시켰고, 해외 주요 국가(미국·유럽·중국·일본 등)의 특허, 상표 및 디자인 제도에 대한 전문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표 II-1-31 교육훈련 현황 ('23년 실적)

(단위 : 일, 명)

과정명		교육일수	수료인원
기본과정	제5기 선임심사관 승급(기술)	7	31
	제5기 선임심사관 승급(행정)	7	16
	제2기 심판관 증거조사 교육	2	12
	제5기 책임심사관 승급(기술)	7	50
	제5기 책임심사관 승급(행정)	7	5
	제11기 심사지도(기술)	1	19
	제7기 심사지도(행정)	1	10
	제5기 심판관 후보자(기술)	5	21
	제5기 심판관 후보자(행정)	5	6
	제56기 신규심사관 과정(기술)	17	39
	제56기 신규심사관 과정(행정)	17	24
	신규심사관 과정(반도체 전문인력)	15	30
전문교육	제3기 심판관 법학전문교육	3	16
	제19기 민법의 이해(총칙)	5	179
	제11기 저작권법의 이해	3	163
	제27기 특허법 이론(上)	5	246
	제19기 민법의 이해(물권)	3	181
	제4기 유럽 특허 제도	2	107
	제5기 미국 특허 제도	2	116
	제24기 상표법 이론(上)	5	194
	제4기 중국, 일본 특허 제도	2	106
	제27기 특허법 이론(下)	5	163
	제6기 해외 상표·디자인 제도(상표)	1	41
	제6기 해외 상표·디자인 제도(디자인)	1	34
	제18기 디자인보호법(이론)	5	141

제2편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과 정 명	교육일수	수료인원
직무교육	제19기 민법의 이해(채권)	3	101
	제11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이론)	3	141
	제24기 상표법 이론(下)	5	159
	제18기 디자인보호법(쟁점과 사례)	3	99
	제19기 민사소송법 이론	5	202
	제6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쟁점과 사례)	3	125
	제19기 민사소송법(쟁점과 사례)	3	153
	제27기 특허법(쟁점과 사례)	3	226
	제24기 상표법(쟁점과 사례)	3	165
	제4기 심사사례 연구(상표)	1	33
	제14기 심사사례 연구(기초, 기술)	2	78
	제4기 심사사례 연구(디자인)	1	20
	제1기 상표 심사 실무 기초	3	16
	제14기 신규공무원 과정	5	44
	제19기 선행기술조사(전기)	2	21
	제19기 선행기술조사(화학)	2	9
	제14기 심사사례 연구(심화, 기술)	2	80
	제1기 명세서 및 청구범위 작성 실습	1	23
	제6기 특실 심사기준 핸드북 독회(上)	3	73
	제4기 IP-R&D 및 특허 빅데이터 분석 전략	2	29
	제15기 신규공무원 과정	5	40
	제23기 심결·판례 연구(기술)	3	73
	제24기 심결·판례 연구(행정)	2	41
	제6기 특실 심사기준 핸드북 독회(下)	4	68
	제3기 주지의 부합 사례 연구	1	84
합계		203	4,053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심사·심판관에 대한 경력별 맞춤형 교육, 지식재산 법제교육 및 심판관 법률 전문교육 등을 통해 심사·심판인력의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강화시키고 협업 적용도를 높여 심사·심판 품질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24년에는 교육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신기술 교육,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이론 및 판례, 첨단 과학수사 기법 교육 등 전문성과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교육과정을 강화하여 지식재산 생태계 전반에 걸친 균형 있는 정책역량 제고를 통한 거시적 안목의 심사·심판관 양성에 노력할 것이다.